

第265回國會
(臨時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 6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7年3月2日(金)

場 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긴급현안보고
가. 대법원 소관
2.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계속)
5. 스포츠산업 진흥법안(계속)
6. 都市開發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建設機械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0.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大韓住宅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14. 韓國土地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15.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18. 障礙人福祉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
20. 檢疫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1. 葬事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2.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3.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國民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
2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8.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30. 對外貿易法 전부개정법률안
31.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3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33. 鑛業法 전부개정법률안
34. 발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35. 中小企業基本法 전부개정법률안
3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37.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3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39.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40. 농지법 전부개정법률안
41. 林業및山村振興促進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42. 畜産法 전부개정법률안
43. 海運法 전부개정법률안
44.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45. 漁場管理法 전부개정법률안
46. 水産業法 전부개정법률안
47. 港灣法 전부개정법률안
48. 경륜·경정법 전부개정법률안
49. 觀光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
50. 국민체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51. 文化藝術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
52.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53.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
5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55. 傳統寺刹保存法 전부개정법률안
56. 鄉校財産法 전부개정법률안
57. 먹는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58. 소음·진동규제법 전부개정법률안
59. 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
60. 廢棄物管理法 전부개정법률안
61. 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62.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
63.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전부개정법률안
6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행정조사기본법안
6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
71.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72. 유네스코活動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7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6. 法律救助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7. 法律救助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8. 法律救助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9. 한국법학원 육성법안(계속)
8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2.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83.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84. 이자제한에 관한 법률안(계속)
85. 이자제한법안(계속)
86. 이자제한법안(대안)

審査된案件

1. 긴급현안보고 7
가. 대법원 소관
2.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17
3.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8
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정의용 의원 대표발의)(정의용 · 강길부 · 고조홍 · 고흥길 · 김명자 · 김문수 · 김부겸 · 김성곤 · 김재홍 · 김태년 · 김태홍 · 김혁규 · 김효석 · 노현송 · 박계동 · 박기춘 · 박명광 · 박재완 · 박찬숙 · 배일도 · 서혜석 · 신기남 · 신중식 · 안명옥 · 안영근 · 염동연 · 원희룡 · 유선호 · 유인태 · 이근식 · 이상경 · 이성권 · 이시중 · 이혜훈 · 임종석 · 장경수 · 전병헌 · 전여옥 · 정문현 · 정성호 · 정의화 · 조경태 · 조일현 · 주승용 · 최경환 · 최재성 · 홍창선 의원 발의)(계속) 18
5. 스포츠산업진흥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강기정 · 강성중 · 김덕규 · 김원웅 · 김재윤 · 김태홍 · 김한길 · 김희선 · 노웅래 · 민병두 · 배기선 · 신기남 · 오영식 · 우상호 · 우윤근 · 윤원호 · 이광철 · 이미경 · 이시중 · 이인기 · 정청래 의원 발의)(계속) 18
6. 都市開發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8
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김동철 · 김태홍 · 서재관 · 신학용 · 양승조 · 유필우 · 이계안 · 이시중 · 장복심 · 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18
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8
9.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8
10.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강혜숙 · 김동철 · 선병렬 · 양승조 · 엄호성 · 이근식 · 장복심 · 주승용 · 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18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1
12.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13. 大韓住宅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14. 韓國土地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15.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김원웅 · 김태홍 · 강창일 · 신중식 · 이근식 · 장복심 · 이상민 · 정장선 · 이원영 · 김태년 · 노현송 · 원혜영 · 이종걸 · 이영순 · 김재홍 · 유선호 · 임종인 · 정성호 · 양형일 · 강혜숙 · 엄호성 · 정봉주 · 김성곤 · 선병렬 의원 발의) 21
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계속) 22
12.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2
13. 大韓住宅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2
14. 韓國土地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2

15.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김원웅 · 김태홍 · 강창일 · 신중식 · 이근식 · 장복심 · 이상민 · 정장선 · 이원영 · 김태년 · 노현송 · 원혜영 · 이종걸 · 이영순 · 김재홍 · 유선호 · 임종인 · 정성호 · 양형일 · 강혜숙 · 엄호성 · 정봉주 · 김성곤 · 선병렬 의원 발의)(계속)	27
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7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27
2.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계속)	27
3.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27
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정의용 의원 대표발의)(정의용 · 강길부 · 고조홍 · 고흥길 · 김명자 · 김문수 · 김부겸 · 김성곤 · 김재홍 · 김태년 · 김태홍 · 김혁규 · 김효석 · 노현송 · 박계동 · 박기춘 · 박명광 · 박재완 · 박찬숙 · 배일도 · 서혜석 · 신기남 · 신중식 · 안명옥 · 안영근 · 염동연 · 원희룡 · 유선호 · 유인태 · 이근식 · 이상경 · 이성권 · 이시중 · 이혜훈 · 임종석 · 장경수 · 전병헌 · 전여옥 · 정문헌 · 정성호 · 정의화 · 조경태 · 조일현 · 주승용 · 최경환 · 최재성 · 홍창선 의원 발의)(계속)	27
5. 스포츠산업진흥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강기정 · 강성종 · 김덕규 · 김원웅 · 김재윤 · 김태홍 · 김한길 · 김희선 · 노웅래 · 민병두 · 배기선 · 신기남 · 오영식 · 우상호 · 우윤근 · 윤원호 · 이광철 · 이미경 · 이시중 · 이인기 · 정청래 의원 발의)(계속)	27
6. 都市開發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계속)	27
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김동철 · 김태홍 · 서재관 · 신학용 · 양승조 · 유필우 · 이계안 · 이시중 · 장복심 · 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27
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계속)	27
9.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계속)	27
10.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강혜숙 · 김동철 · 선병렬 · 양승조 · 엄호성 · 이근식 · 장복심 · 주승용 · 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28
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8
18. 障礙人福祉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8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8
20. 檢疫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8
21. 葬事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8
22.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6
23.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6
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6
25.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6
26. 國民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김효석 · 장향숙 · 백원우 · 박상돈 · 안상수 · 심재덕 · 김재윤 · 안민석 · 양형일 · 강기정 · 정성호 · 서혜석 · 김종률 의원 발의)	37
2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장복심 · 변재일 · 배기선 · 박상돈 · 이종걸 · 조정식 · 장향숙 · 배일도 · 한광원 · 주승용 · 김교홍 · 고경화 · 강길부 · 이기우 · 이시중 · 백원우 · 우제항 · 김낙성 · 김형주 · 김영주 · 이은영 · 노웅래 · 장경수 · 양형일 · 김선미 · 강혜숙 · 김영춘 · 이원영 · 이광철 · 김낙순 · 장영달 · 심재덕 · 이계안 · 이근식 · 이미경 · 유재건 · 강기정 · 양승조 · 윤호중 · 이경숙 · 이경제 · 정진섭 · 이인영 · 홍미영 · 노현송 · 제종길 의원 발의)	37
28.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현애자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의원 발의)	37
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김진표 · 김선미 · 김춘진 · 구논희 · 우제창 · 문학진 · 김낙순 · 장향숙 · 최재성 · 김덕규 · 백원우 의원 발의)	37

30. 對外貿易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31.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3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33. 鑛業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34. 발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35. 中小企業基本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3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37.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3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39.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40. 농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41. 林業및山村振興促進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42. 畜産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43. 海運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44.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45. 漁場管理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46. 水産業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47. 港灣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48. 경륜·경정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49. 觀光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50. 국민체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51. 文化藝術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52.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53.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5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55. 傳統寺刹保存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56. 鄉校財産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57. 먹는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58. 소음·진동규제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59. 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60. 廢棄物管理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61. 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62.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63.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70.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최병국·정갑윤·윤두환·김기현·정몽준·권철현·유기홍·김영춘·이경숙·민병두·김영숙·김교홍·최재성·이은영·정봉주·정문현·이군현·안민석·이시중·박기춘·홍창선·박상돈·김양수·한광원·조경태·문석호·신학용·유인태·우상호·박명광·오제세·변재일·노영민·유필우·김혁규·홍재형·이미경·김근태·양승조·정종복 의원 발의)	47
71.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발의)(이상민 의원 외 23인 발의)	47
72. 유네스코活動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7
6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61
65. 행정조사기본법안(정부 제출)	61

6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1
6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2
6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2
6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2
7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김태년·이해봉·정성호·김동철·유승희·우제창·박명광·서재관·홍창선 의원 발의)(계속)	67
7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운석 의원 대표발의)(장운석·정병국·이혜훈·한선교·정진섭·안홍준·정종복·최구식·안상수·최병국·김용갑·박승환·이군현·서상기·이종구·김충환·신상진·정희수·임인배·주호영·박찬숙·이계진·김기춘·주성영·김재경·김정권 의원 발의)(계속)	67
7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7
76. 法律救助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재경·엄호성·강창일·신학용·안상수·박상돈·심재덕·이시종·고조홍·이원영·조성래·정성호·김태년·선병렬·우제창·문석호·박기춘 의원 발의)(계속)	67
77. 法律救助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8
78. 法律救助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79. 한국법학원 육성법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최재천·주성영·주호영·김재경·천정배·양승조·우윤근·장운석·정성호·선병렬·최용규 의원 발의)(계속)	68
8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박세환·나경원·최병국·임종인·선병렬·김동철·이상경·주성영·조순형·이종걸·이상민·안상수·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68
8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김성조·심재철·김재경·엄호성·유승민·김재원·임혜규·김기현·이인기·고조홍·안상수·신국환·김태년·황우여·강기정·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68
82.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강창일·양승조·민병두·엄호성·이은영·우윤근·김태년·김현미·이영호·장영달·서재관·김정권·홍재형·최성·장복심·박상돈·이근식·강기정·박찬숙·주승용·정성호·이해봉·이상열·최용규·장경수 의원 발의)(계속)	68
83.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68
84. 이자제한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이용희·임종인·선병렬·주성영·최병국·문병호·이상경·이화영·이상민·노영민·오영식·김낙순·김재윤·김선미·우원식·최규성·우윤근·이영호·김동철·양승조·변재일 의원 발의)(계속)	68
85. 이자제한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최순영·천영세·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계속)	68
86. 이자제한법안(대안)	68

(10시51분 개의)

○委員長 安商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오전에는 녹화로 오후에는 생방송으로 중계방송을 하게 되며 장애인 차별금지법 심사에 대해서는 KBS2 TV '사랑의 가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회의과정 촬영이 있

을 예정입니다.

더욱이 오늘 심사할 법률안들도 매우 많습니

다. 회의 참석 시간 등 회의 운영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법안심사1소위를 우리 전체회의 도중에 해 가지고 전체회의가 이렇게 늦게 시작하게 된 점을 위원장으로서 몹시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전체회의 도중에 제1소위는 허용하지 않

겠습니다. 행정실에서도 앞으로 일체 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미리 10시 이전에 소위를 열어야지 왜 10시 이후에 소위를 열어 가지고 전체회의를 못 하게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임종인 위원** 맞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나머지 위원님들은 기다리시고 이게 됩니까?

오늘도 법률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2월 27일 전체회의에서 200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수사결과와 관련한 법무부의 긴급현안보고를 들으면서 그동안에 이루어진 불출석 증인 국회 고발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결과 자료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최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상고심 선거 공판에서 공무원 의제조항에 대한 그동안의 판례를 변경한 문제도 보고를 받아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대법원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긴급현안보고를 듣고 이어서 법률안 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보고

가. 대법원 소관

(10시53분)

○**委員長 安商守**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 소관 긴급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선 느낌이 드는 오늘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법사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대법원의 긴급현안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바에 따라 국회 국정감사 등의 절차에 불출석하여 국회가 고발조치한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과 최근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판례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으로서 법사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설명을 요청하시거나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 그리고 성의껏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오늘 긴급현안

보고와 관련하여 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새겨듣고 이를 사법정책 수립과 사법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법부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법원의 업무에 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충고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 초기에 법원 현황 일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개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현안보고로 들어가하고자 합니다.

만일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보고할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강일원 사법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긴급현안보고는 원래 그 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대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준비들을 했을 테니까 그렇게 허용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강일원** 감사합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강일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국회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형 선고 현황과 변호사법 위반 판례 변경과 관련한 현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대, 제17대 국회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하여 고발된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 현황은 보고자료 1쪽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회에 의해서 고발된 50명 중 검찰에서 48명을 약식기소하였고 그중 40명에 대해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보고자료 2쪽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벌금 100만 원에서부터 600만 원까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법원이 구약식 사건을 공판 절차에 회부해서 벌금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벌금 2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처리입니다. 하지만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일률적인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의 발령은 타당하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은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정식의 공판 절차에 따라 재판하고 엄정한 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적절한 방법으로 재판부에 알려서 재판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법 위반 판례 변경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 회장인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청탁하여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음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4년에 추징금 62억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111조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고자료 7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호사법이 2000년 1월 28일 전문개정되기 전의 199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처럼 별직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전의 판례였습니다.

보고자료 8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뒤 변호사법이 개정되었고 2005년 5월 13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그 개정된 법의 취지에 따라서 변호사법 제111조의 알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1월 16일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그 개정된 법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서 2005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의 요지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의 공무원 의제조항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게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규정만으로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이 변호사법 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6인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의견의 요지는 보고자료 1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변호사법이 개정된 뒤 변호사법 제111조 괄호

부분의 해석이 대법원에서 문제된 사건은 위에서 보고드린 2건의 대법원 판결뿐입니다. 따라서 2005년 판결로 대법원의 견해가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정도에 관해서 견해를 서로 달리한 사건입니다. 죄형법정주의를 어느 범위까지 관철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철학의 차이에서 이와 같은 견해차이가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범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 판결 결론의 당부에 관해서 어느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종인 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임종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소위원회를 이유로 전체 상임위원회를 50분 이상 늦게 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정되어 있는데, 저나 조순형 위원님은 가만히 이렇게 50분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소위원회 구성에서 제가 1소위원회, 2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있었는데 제가 탈당한 뒤에 저를 여기에서 다 빼고 변호사수임료조사소위원회에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1소위, 2소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원하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도 제가 탈당함으로써 8석이 7석이 됐기 때문에 1석 정도는 양보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열린우리당 위원을 대신 집어넣고 저를 빼는 것은 옳지 않다,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를 간사께서 얘기해 주시고 제가 원하는 이상 저를 1소위, 2소위 아무 위원회에 넣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제가 1월 22일 탈당한 후에 열린우리당 측에서 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뚜렷한 당파성을 보였다고 생각합니

다. 좋아요. 그러면 저도 탈당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법사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의 좌석을 열린우리당이 있는 이 좌석에서 노회찬 위원 좌석으로 위원장님께서 바꿔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모든 것은 나중에 간사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소위 때문에 늦어진 것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예.

○**이상민 위원** 1소위 위원장으로서 오늘 1소위 때문에 전체회의 개회가 늦어지고 조순형 위원님 또 임종인 위원님께 지장을 주게 된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간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다만, 사정이 당초 예상과 달리 논의가 좀더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 구성 건은 임종인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인 위원** 위원장님, 좌석을 바꿔 주세요.

○**委員長 安商守** 그 부분도 같이 다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질의를 하실 분은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먼저 하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제가 긴급현안질문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ですよ.

우선 두 가지 점에, 하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찰에서 판례적으로 약식기소를 해 오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약식재판을 하고 그렇게 해 온 것이 판례입니다. 그것은 인정하겠는데요.

그러나 이번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검찰에서도 앞으로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법원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국정감사라는 중대한 국정업무 수행을 그야말로 방해하는……

또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증인들이 안 나옵니다, 벌금 얼마 물고 나면 그뿐이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법원에서도 깊이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판례 변경을 할 때는 지금 과반수로 판례 변경

을 하고 있는 거죠?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판결을 내리거나 이럴 경우 또 판례 변경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례 변경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헌법재판소는 판례 변경 자체는 제한이 없고요. 단지 위헌 결정을 할 때에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런데 판례 변경도 일종의 법의 변경이고 그런데 과반수로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지금 이번처럼 8 대 7 이렇게 되어 가지고 판례가 변경되어서 결국 법이 변경된 건데요.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반수는?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판례 변경은 3분의 2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법을 변경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견해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8 대 7로 판례가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을 좀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이번 사건과 같이 종전의 판례가 4인의 소부에서 결정된 경우에는 4인의 의견보다는 7인의 의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소부에서 결정된 것을 전원부에서 변경하는 데는 과반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일반적으로 조금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나라 헌정상 과거에 국가배상법 위헌 사건의 경우에 그때 헌법 위반을 할 때는 3분의 2로 해야 된다는 법원조직법 조항을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결정했는데요. 그때에 대법원 판결의 요지가 판결의 정족수에 관한 것은 일반적으로 2분의 1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가중하려면 헌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헌법의 근거가 없이 3분의 2로 가중해서 정한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저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좀더 신중하

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安商守** 더군다나 국회에서 법을 개정 하면서까지, 예를 들자면 부당한 돈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고 의제조항을 둔 건데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켜보더라도 이런 판결은 나올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좀 유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趙舜衡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安商守** 조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舜衡 委員** 조금 전에 행정처장께서 위원장님이 묻는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례 변경이 명문으로 안 나온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헌재법 제23조(심판정족수)에 위헌결정하고 탄핵의 결정 등은 3분의 2이고…… 2호에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도 6인 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제가 그 부분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趙舜衡 委員** 헌재가 그러니까 비록 법원조직법에 정족수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정신이나 취지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게 위원장 말씀이에요. 확인하시고 말씀하셔야지요.

변호사법 위반 판례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현안보고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변호사법 제111조 괄호 부분의 입법형식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다수’ 이렇게 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예, 그렇습니다.

○**趙舜衡 委員** 불명확성에……

그렇다면 적어도 대법원으로서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취지나 입법목적의 인식을 하고 있으면 다만 문언의 불명확성이나 이것 때문에 결국, 말하자면 입법 불비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당연히 입법자에 대해서 법개정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개정을 요구했어야지 어떻게 6년 동안, 2000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입법 불비라고 그래서 국회에서 전면개정을 할 때 변호사법부터 했어요. 6년 동안 법원은 그것을 그대로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확립된 것이 아니다 현안보고에서 그러셨는데 아니, 대법원의 판결이 됩니까? 그게 하급법원의 판결입니까? 적어도 대법원의 판결인데 한 번을 하건 백 번을 하건 그 무게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이미 확립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판결이 없었으니까 확립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적당치 않고요, 그랬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수의견에 보면요, 다수의견도 어떻게 많은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입법자의 의도, 2000년도에 변호사법을 개정한 입법자의 입법취지나 입법목적이나 입법의도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그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문언이 명확치 않다 이것인데 그래 가지고 끝에 가서 심지어는 입법자가 이렇게 개정을 했어야 된다고 아주 친절하게 문언까지 다 만들어 놔요.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개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법령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자가 취급하는 사건·사고는 변호사법 제111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로 본다’ 이렇게 하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다수의견에서. 그렇다면 당연히 입법 개정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7 대 6으로 말이지요, 그것도 6년 동안 있다가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7 대 6으로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돼요? 이런 판결에 누가 승복을 합니까? 7 대 6의 이것을 갖다가……

이것 반대의견 보세요. 반대의견을 봐도 일목요연하게, 아주 수궁이 돼요. 물론 다수의견도 수궁이 되지만은. 그러니까 그랬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말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입법이 문언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 국회에다가 적절한 의견을 제시를 해서 개정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법원의 활동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趙舜衡 委員** 지금 그래야지 이게 됩니까? 2000년도에 국회가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서로 철학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다고 말이지요. 정족

수, 물론 명문규정은 없지만 앞으로 대법원도 판례 변경을 3분의 2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7 대 6으로 합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를 말이지요.

그리고 기소는 97억을 했어요. 말하자면 97억을 브로커가 받아 챙긴 건데 이 사람을 무죄로 해 났으니…… 도대체 대한민국에 법이 있습니까? 사법정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 누가 책임 집니까? 원심판결은 징역 4년에 62억 2000만 원 추심이에요. 이런 판결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7 대 6으로 변경을 하다니 말이지요.

○**委員長 安商守** 8 대 7입니까, 7 대 6입니까?

○**趙舜衡 委員** 7 대 6이에요.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7 대 6입니다. 전부 13명입니다.

○**趙舜衡 委員**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국회의 입법권도 한계가 있어요. 무제한으로 행사하는 것 아닙니다. 사법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잖아요. 문언상 불명확하단 말이에요. 죄형법정주의 그런단 말이지요. 그것 가지고 7 대 6으로 갈러 가지고 이런 판례 변경을 하니 말이지요.

대법관 열세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서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다가 우리가 적절히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하도록 하자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 가지고 법률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趙舜衡 委員**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말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그래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률의 불비점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일찍이 법률이 수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趙舜衡 委員** 분명히 얘기하는데 다수의견하고 반대의견하고 같이, 국회 입법자의 입법취지나 목적이나 입법 내력 등을 다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게 2000년도에 그렇게 개정을 했다, 그래서 의도는 분명하다, 그런데 다만 문언이 불명확하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이런 것인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난번에 고위 법관

이, 중앙지법의 정영진 부장판사인가요? 이분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세 번씩이나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렸어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예.

○**趙舜衡 委員** 대법원장께서 이것 다 보시고 지금 어떻게 할까 심사숙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왜 이것 보고 안 하세요? 이것도 사실 오늘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위 법관이 세 번씩이나 이렇게, 결국은 사법불신…… 이용훈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이래 가지고 세 번씩이나 했고 하여간 오늘날의 사법불신이 이렇게 된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부정적인 행태가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행정처장께 세금 탈루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조관행 부장판사 사건의 전별금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소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께서 나서서 어떤 형식으로, 국회에 나와서 해명을 하든지 신문기자 회견을 하든지 뭘 하든지 분명히 의혹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대법원장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행정처장은 아실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대법원장님께서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 가지고 해명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趙舜衡 委員** 그러면 누가, 행정처장이 대신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 본인이 하셔야지요. 전부 재야 변호사 시절에 일어난 일인데요.

보니까 대법원은 행정처장하고 행정처 여러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해명하고 변명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왜 그러십니까? 대법원장 책임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몰라도 그렇지도 않은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아마 질의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인 위원** 며칠 전에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국회 고발사건 처리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보고가 있었습니다.

구약식 벌금형을 왜 선고하게 됐느냐, 약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법무부장관은 법원에 책임을 미

루었어요. 법원은 국회의 출석요구 불응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해야 되는 것을 감안해서 검찰에서도 약식기소를 주로 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의 보고를 보니까 이유가 96%를 검찰이 약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었고 또 2건이나 정식재판을 사안에 따라서 했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우리 법사위원장님께서도 잘 지적하셨지만 국회 증언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검찰·법원에서 관대하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종인 위원** 왜 관대하게 됐을까요?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저희 생각은 아마 법무부장관님께서 보고하실 때 다소 충실치 못한 자료를 보고 받으시고 그렇게 보고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게 법원이 벌금으로 관대하게 해 줬기 때문에 검찰에서 약식청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인 위원** 국회의원들 선거법 위반 같은 것 있을 때 저희들은 매우 가혹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겠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검찰·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정치의 영역이 지나치게 줄어들고, 그래서 검찰·법원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결국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철우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조승수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철우 의원이 선거법으로 250만 원 벌금 받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선거유세를 하는데 한나라당의 어느 후보, 그분 이름이 고조홍 후보였는데 그분 이름을, 고조홍 후보라고 앓고 조·중·동 언론의 문제점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중·동이 아니라 상대방인 고조홍을 비판했다고 그래서 말 한마디로 250만 원 벌금을 받고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승수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하기 하루 전에, 3월 31일부터 선거운동일이었는데 3월 30일 환경처리 문제로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장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 나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가서 쓰레기 처리장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사전선거운동을 이유로 또 150만 원 벌금을 받고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저는 법원이 해석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경중에 있어서 주안점으로 두는 것들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선거법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법원에서 일정한 분들에게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나 선고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게 하고 또 일부분에서는 상실하게 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종인 위원** 행정처장님도 작년 국정감사 때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작년 우리 법사위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문제가 거론되어서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의 불법행위, 거대채벌 삼성의 불법행위 때문에 이견회라는 회장을 출석시켜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견회 씨는 증인으로 채택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회에서 밝혀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검찰과 법원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구약식으로 하고, 구약식도 안 해 버리고, 해도 가볍게 해 버리고 그러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법원에서 이것은 정말 중요 사건이다, 국회에서 그런 일을 하도록 법원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약식을 청구해 왔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소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영진 부장판사 사건은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부장판사가 감히 대법원장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종래에 법원 내부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법원 내부 통신망이 어떻게 이용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도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정영진 부장의 경우에는 논문의 형식이 아니고 일종의 인터넷 게시물의 형식으로 쓴 것으로 부장판사로서는 적절치 못한 처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종인 위원 보통 정치판에서도 그런데 어떤 좋은 일을 하면 너는 말은 맞는데 왜 버르장머리가 없느냐, 예의가 없다 늘 그렇게 얘기하고 정리를 하거든요. 저는 정영진 부장판사의 말, 글 그 자체는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석궁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문제점 지적하고 아까 조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법원장의 수임료 문제랄지 전별금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제시한 것 그 자체에는 저는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장님이 계속 문제되는 것은 역시 판사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또 판사 하는 이런 일환에 있어서 이용훈 대법원장님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김&장 사건 분석보고서를 보니까 김&장 사건도 여러 건 수임을 했어요. 그리고 대기업을 옹호하는 사건을 했어요. 수임료 부분이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벌었고 그리고 또 대법원장 되고 이런 것이 문제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래 지방에 돌아다니면서도 국정감사 때, 판사 하다가 변호사 한 2, 3년 하다가 또다시 판사로 복직해서 전관예우 다 받고 하는 것하고 대법원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대법원장 임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 대통령께서도 크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동철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安商守 질의하시겠어요? 예, 하세요.

○김동철 위원 수자원공사 고석구 피고인 사건에 대한 지적은 위원장님이나 조순형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는데 주장들이 조목조목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런 입법의 불비로 인한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어떤 결정이 나올 것 같은 경우라면 민·형사를 불문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입법의견을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지금까지 그 점에 대해서 활동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고석구 피고인에 대한 변호를 누가 맡았는지 보니까 법무법인 세종과 로고스에서 맡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특정 변호인이 누구인지 나오면 다시 또 구체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김진기 전 대구고등법원장이 퇴임하고 나서 3일 만에 선거법 위반 사범 두 사람을, 당선무효형을 1심에서 선고받은 손이목 경북 영천시장과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1심에서 벌금 250만 원 선고받았는데, 사흘 만에 형사사건 2건을 맡았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국정감사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전관예우 금지해야 된다, 고액 수임료 관행 어떻게든지 철폐해야 된다는 식의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도 보나마나 수천만 원 내지 수억의 수임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되었을 경우에는 막대한 성공보수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관행을 법원에서……

그리고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등법원장이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행히 후임인 박용수 고등법원장께서 재판부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것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법원에서 담당 재판부에 강력한 뜻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관들이 받은 사건, 수임한 사건은 오히려 불이익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관에게 맡기면 결과가 더 불리하게 나온다 이런 엄중한 경고를 재판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얘기해 보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구체적인 개별사건 관계에 대해서 저희 행정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구의 경우에는 서울처럼 그렇게 수임료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진기 법원장도 수임하셨어도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 않았고 성공사례금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구에서 제가 죽 재판을 해 왔습니다마는 전관 변호사의 영향이 전국적으로 있었다면 전국 어디보다도 가장 영향이 작게 재판을 해 온 곳이

아니었나 저는 죽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관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선고받을 것을 이하로 선고받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철 위원** 처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처장님, 지금 대구가 오히려 더 낮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대구 지역에서 구속과 보석 사건 수임료 1~3위를 차지한 변호사들이 모두 전관들이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구속사건 154건을 도맡아서 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사건 수는 많아도 실제로 받는 수임료는 서울보다 훨씬 적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당사자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시고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저희는 대구에서 죽 근무했기 때문에 받는 수임료 정도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불출석 고발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 현황을 보니까 과거에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할 정도로 구약식 기소가 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통상재판에 회부한 사례가 거의 없지요?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예, 통상회부한 사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건수가 2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주영 위원** 있기는 있었어요. 거의 없고, 보니까 벌금형 그대로…… 이래 가지고는 국정감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처장님께서도 인정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예.

○**이주영 위원**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오는 사람들은 대개 사회 지위가 높고 유력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념에서 보더라도 더 엄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변호사법 위반 판례 변경은 정말 문리해석으로는 그렇게 가깝게 다수 의견대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법원이 그렇게 문리해석에만

충실해 왔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과거의 판례들을 보더라도 문리해석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식에 맞게 판결해 온, 그런 해석 경향을 보여 왔는데 이번 사례는 우리 국민들 수준에서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말씀을 꼭 부언해서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행정처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마는 5·31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 사건들의 판결 동향을 제가 자료를 죽 다 받아 봤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더 엄정하게, 그래서 당선무효형이 많이 나오는 경향을 죽 읽어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법원별로 추세를 살펴보니가 특정 고등법원 지역에서 단순히 당선 무효된 사람을 항소 기각하는 이런 정도를 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미달하는 벌금 50만 원, 80만 원 받은 사안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당선무효가 되는 형을 상향해서 선고하는 그런 판결이 유독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아닙니다. 저는 방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주영 위원** 차장님께서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이주영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저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 고등법원에 가면 거기는 1심에서…… 지금 1심 재판장들이 간단하게 당선 무효에 미달하는 판결을 선고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검찰이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기소를 워낙 많이 하다 보면, 또 평균적으로 봐서 좀 사소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기소가 된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잘 분류해 가지고 그래도 1심에서 양형을 적절히 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어느 특정 지역의 고등법원 선거 전담재판부에만 가면 상향되어 가지고 당선 무효…… 물론 그게 다 나쁘다, 그게 다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1심에서 그런 양형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

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지역하고 형평에 맞지 않게 유독 많다고 하면 이것은 그 경향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이지요.

차장님께서서는 지난번에 자료도 법사위원회에 제출하시고 했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양형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관리는 법원행정처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주성영 위원** 저도……

○**委員長 安商守** 주성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성영 위원**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차장께서는 먼저 국정감사 중인 불출석과 관련하여 법정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예,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영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긴급현안보고를 하시면서……

○**委員長 安商守**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렇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주성영 위원** 구성요건도 예상되는 구성요건이 단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예, 그렇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벌금 몇백만 원씩 선고된 예에서 법원에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한 상식적인 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닐 것입니다. 차장님, 오늘 여러 답변에서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니까 실천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우성산업하고 수자원공사와 관련된 이번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사건인데, 지금 7 대 6으로 수자원공사 사장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률 논쟁은 피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이 판결이 앞으로 역사적으로 상당히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법 해석의 문제나 입법의 문제다 이런 것으로도 보지 않는 국민들이나 법학 이론가들이 많습시다. 왜냐하면 그동안 관련 변호사법이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형법 해석에 있어서 수자원공사 사장을 당연히 공무원으로 봐 왔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도 보면 7 대 6입니다. 종전의 상식적인 입장을 견지한 대법관 이름을 제가 한번 불러보면 김용담·양승태·김황식·박일환·김능환·안대희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번에 다수의견 낸 분들은 지금 이 보고서에는 성함이 없는데 차장께서 성함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수의견 낸 대법관의 성함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다수의견은 대법원장님, 고현철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입니다.

○**주성영 위원**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예.

○**주성영 위원** 최근에 대법원이,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지만 현재 대법원장님 등장 이후에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 신뢰를 많이 거둬들이고 있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파열음, 우선 전관예우 문제도 지금 현재 대법원장께서 전관예우의 화신입니다. 대법관 퇴임 이후 4년 동안 신고된 수입료 금액만 60억이에요. 그중의 70% 이상이 전부 대법원 사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이 못 믿는 것입니다. 대법원장 스스로 그것은 대한민국 전관예우의 제1호 전형이고 또 전별금을 준 것, 탈세한 의혹……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 판결을 포함해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어디 가서 무슨 말씀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종합적인 상황에서 지금 현재 대법원장께서는 정말 진퇴를 포함해서 국민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대법원장님께서서는 그런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성영 위원** 건의를 한번 하세요.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언론 지상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우성산업개발·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한민국의 힘 있고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던 것이 왜 이 사람에게만 무죄가 선고됩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대법원장의 행태…… 국민의 여론을 대법원장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좀 강렬하

고 직설적으로 전달하십시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위원님의 말씀을 대법원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趙舜衡 委員** 위원장님, 한 말씀만 잠깐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예, 하십시오.

○**趙舜衡 委員** 거듭 말씀드리는데 대법원장께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국회에 나오든지 신문 기자회견이라든지 어떤 형식, 방법이든지 본인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해명을 하고 거취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용퇴를 하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물러날 수 없다든가……

정영진 부장판사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원고 주장을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하는 자백 간주 판결이라는 게 있는데 대법원장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명백히 해명하지 못하면 자백으로 간주하는 수밖에 없다”, 이 부장판사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묵만 지키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장판사예요. 연령도 거의 50대 된 분이던데 말이지요. 아무리 인터넷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하더라도 이게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되고 있는데……

이분이 또 그랬어요. “스스로 결단을 못 하면 국민이 나서서 해야 된다” “국회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심지어는 “탄핵소추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적절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은 사법부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좀 강력히 전달을 하세요. 전언도 하시고요.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예, 위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대법원에 가서 한번 얘기했는데 모시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뜨고 있어요. 서양의 정의의 여신상은 다 가리고 있는데 말이지요. 눈을 빨리 가려야 됩니다.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뜨고 있어서 오늘날 사법부에 이런 일이 많이,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좀 그렇게 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위원님 지적 이후에 저

희가 과거의 자료를 죽 봤는데 세계 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중에는 한 반은 눈을 감고 있고 반은 눈을 뜨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래도 눈을 가리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고 다 이러는 것이지요.

마칩니다.

○**委員長 安商守** 처장이 나오셨으니까, 최근 언론을 보니까 ‘항소심에서는 1심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깎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대법원장의 지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우리나라의 항소 받는 사람의 비율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이 항소심에서 쉽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양형을 감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이것이 사법 전체로는 형사항소심 재판부를 많이 늘려야 돼 가지고 정말 제대로 재판을 할 1심 재판부의 숫자가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것은 과거에 10년 전부터 죽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죽 해오던 이야기를 금년 연초에 다시 특별히 세미나를 통해 강조한 것이고요.

○**委員長 安商守**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것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과거부터 죽 그렇게 해왔고 저도 과거부터 소신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일은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세미나……

○**委員長 安商守** 그런데 법원의 편의만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재판받는 국민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봐요.

예를 들자면 1심에서 자료 제출을 제대로 못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항소심에서 이제 마지막 이니까 자료를 제대로 충분히 제출하고 또 변경사항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형이 감경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1심이…… 만날 법원에서 주장하잖아요. 경륜 있는 판사가 많아야 된다, 그런데 1심은 지금 젊은 판사, 30대 초반의 새파란 판사들이 단독판사로서 그냥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짧은 경륜을 가지고 경험도 부족한 이런 판사들이 내린 결론을 그대로 항소심에서 다 존중해 준다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

이 그야말로 큰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항소심은 항소심대로 기준이 있어서 판단할 것이고 1심은 1심대로 있고, 그다음에 1심 판사들은 너무 젊고 경륜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데 항소심 판사들은 아무래도 경륜이 있고 경험이 풍족한 판사들이니까 1심이 너무 가혹하다 해 가지고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재판이 너무 항소심이 많아지니까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자료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주장이 바뀔 수도 있고 합의가 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1심 판단이 가혹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그것은 언론보도가 너무 짧게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원심 판결을 파기해서 형을 축소해야 되고요. 아무런 사정변경도 없고 1심에서 그것을……

○**委員長 安商守**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내 얘기는…… 지금 법원에서 예비판사 폐지하자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1심 단독판사의 나이를 좀 올려 가지고 경험 있는 판사들을 앉히자는 게 지금 예비판사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젊은 판사들이 그냥 막 재판하는데 경험과 경륜이 부족하잖아요. 우리나라같이 30대 초반의 판사가 사람 운명을 좌우하는 형사단독을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젊은 판사가 자기 경험·경륜 부족으로 너무 가혹한 판결을 했으면 항소심에서 경륜 있는 판사가 그것을 좀 조정한다면 사정변경이 없다 해도 깎을 수 있는 것이지 뭘 그래요. 그렇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항소심에서 재판해 보고 1심의 양형이 현저하게 잘못됐다면 물론 파기할 수 있고 또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래처럼 1심은 형을 좀 높여 가지고 선고하고 항소심은 으레 깎아 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선진 사법으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법 운영도 과거의 온정주의적인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그야말로 법률에 따라서 선진국처럼 제대로 해 나가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선진국은 예를 들면 판사도 젊은 판사, 30대 초반의 판사가 단독판사를 하는

예가 선진국에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독일의 경우에는……

○**委員長 安商守** 적어도 재야 변호사 중에 경험 있는 사람들 중에서 판사를 임명하고 이르기 때문에 대개 중요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40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0대 초반, 20대 후반의 새파란 판사한테 전부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우리 국회에서 이런 우려가 나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좀 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30대 초반이 하는 판결을 사실 국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그래서 지금 1심 단독을 강화할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법원 소관 긴급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서 제72항까지의 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9조의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회부일이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30항부터 제63항까지 34건의 법률안들은 법제처에서 추진하여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내용 변경이 없으므로 바로 심의할 필요가 있고, 제64항에서 제69항까지의 법률안들은 출자총액과 관련되거나 국가유공자 가산점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상태 해소와 관련된 안건들로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제70항에서 제72항까지의 법률안들은 울산국립대학교의 설립, 위험결정된 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피해 방지, 유네스코 본부 집행 이사의 진출을 위하여 각각 신속하게 법률을 처리할 필요가 있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 상정에 관해서는 의결이 필요한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3.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정의용 의원 대표발의)(정의용 · 강길부 · 고조흥 · 고흥길 · 김명자 · 김문수 · 김부겸 · 김성곤 · 김재홍 · 김태년 · 김태홍 · 김혁규 · 김효석 · 노현승 · 박계동 · 박기춘 · 박명광 · 박재완 · 박찬숙 · 배일도 · 서혜석 · 신기남 · 신중식 · 안명옥 · 안영근 · 염동연 · 원희룡 · 유선호 · 유인태 · 이근식 · 이상경 · 이성권 · 이시종 · 이혜훈 · 임종석 · 장경수 · 전병헌 · 전여옥 · 정문헌 · 정성호 · 정의화 · 조정태 · 조일현 · 주승용 · 최경환 · 최재성 · 홍창선 의원 발의)(계속)

5. 스포츠산업 진흥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강기정 · 강성종 · 김덕규 · 김원웅 · 김재윤 · 김태홍 · 김한길 · 김희선 · 노웅래 · 민병두 · 배기선 · 신기남 · 오영식 · 우상호 · 우윤근 · 윤원호 · 이광철 · 이미경 · 이시종 · 이인기 · 정청래 의원 발의)(계속)

6. 都市開發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김동철 · 김태홍 · 서재관 · 신학용 · 양승조 · 유필우 · 이계안 · 이시종 · 장복심 · 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9.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0.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강혜숙 · 김동철 · 선병렬 · 양승조 · 엄호성 · 이근식 · 장복심 · 주승용 · 조정태 의원 발의)(계속)

(11시54분)

○**委員長 安商守** 의사일정 제2항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진흥법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하천

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신 이주영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주영**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이주영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률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헌법재판소가 판시하고 있는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국제빈곤 퇴치라는 이 법률안의 목적이 정당하고 부과금액도 1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경미하며 간접적이거나 국제빈곤 퇴치를 통하여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해서 해외여행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등 관련성을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현재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 법률안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목적세의 신설을 통해서 입법목적 달성을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안 제15조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의 운영 재원과 빈곤퇴치기여금의 재원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주의적인 의미에서 빈곤퇴치기여금이 한국국제협력단의 일반적인 운영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에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의 병합심사를 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동일한 이유로 국회운영위

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종합적인 구호체계를 담을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첫째, 국내재난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또 해외재난에 대하여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각각 기본법이 되도록 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해외재난 규정보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였고 둘째, ‘해외재난’ 용어 정의에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내·외국인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해외긴급구호본부를 외교통상부에 설치해서 외교통상부장관이 본부장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외교통상부장관이 해외긴급구호대장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조 분야의 책임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스포츠산업진흥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스포츠’라는 개념과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 이 두 개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기존 체육의 개념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법안이 스포츠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구를 정비해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스포츠’라는 외래어를 법률의 제명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했습니다. ‘스포츠’라는 용어는 우리말로 이미 정착되어 국어사전 등에 등재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원안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밖에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 국어전문가를 신속히 채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소유자 동의 요건 중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요건을 완화하여 2분의 1 이

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민간부문의 택지 개발 등을 촉진할 필요가 있고 개발계획안 작성이나 구역 지정 과정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선행되어 이미 소유자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음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시행자의 토지 수용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출자하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출자총액제한 대상인 대기업의 참여가 없이는 사실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특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관 부처와 상임위원회가 다른 이 법에서 특례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로가 아닌 공사현장에서 음주운전 등을 한 건설기계 조종사 역시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심사하였습니다.

도로가 아닌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농기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건설기계 수급 조절에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는 수급조절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 수급조절요인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 계획을 마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2급 하천 편입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현재 지방2급 하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사유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수청구제의 인정 여부는 지방재정 능력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의 문제임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 후 하천 유역변경 등으로 사실상 사적 유용 가능성이 상실된 하천 구역에 대하여는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하천시설 관리규정 위반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심사하였습니다.

이 지적을 받아들여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만 처벌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허가 주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재정경제부장관을 국유재산 관리의 주무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과 상충하는 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철도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무상대부의 요건을 한정하는 입법 개선안인 점과 관련 유사 입법례를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의 예외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9건의 법률안 심사를 끝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할 예정이니까 바깥에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다른 부처의 관계자들은 일단 식사하러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부과·징수는 사실 우리 법사위원장실에 아프리카 대사님들이 여덟 분인가 아홉 분인가 다녀가셨습니다. 이주영 위원님도 그때 참석하셨지요?

○**이주영 위원** 예, 참석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다녀가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좀 잘 사니까 빈곤한 아프리카 국가들 좀 도와 달라고 대사님들이 여덟 분인가 이렇게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의 빈곤상태에 대해서 좀 들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좀 많이 도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전에 못살 때 외국으로부터 많이 원조를 받았고 그래 가지고 오늘날 부흥을 이루었는데, 또 유엔이 많이 도와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1000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0원 해 가지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올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저희 외교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지원을 했으면 하지만 또 국내 민간 위원들은 일반 국민들을 생각해 가지고 너무 과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가지고 일단은 1000원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했는데, 소위에서 검토를 할 때 이것이 위헌성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렇게 부담금 형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일반세 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 액수를 이 법에 의한 부담금으로 증액을 할 경우에는 자칫 위헌의 시비에 휘말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는 다른 재원으로 강구해서 그쪽에서 해결토록 하세요, 그것이 마땅하지 않

겠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소위원장님 보고하실 때 위헌 여부에 대해서 의견 한 것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소위원장 이주영 위헌성이요?

○이상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준다……’

○소위원장 이주영 그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성이라든지 목적부합성, 규모, 이런 등등을 참작해서 원안 유지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다음에 올릴 때는 좀 많이 좀 올려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계시는 국무위원님은 전부 오후에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의결만 하면 되니까요. 그냥 오전에 마쳤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기로 되어 있고 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 법률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속개를 할 텐데 꼭 그 시간을 지켜 주셔서 많이 활발하게 토론도 해 주시고 또 의결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오후 2시에 법률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委員長 安商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법률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2.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大韓住宅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韓國土地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委員長 安商守 의사일정 제1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내지 14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안설명하실 차례인데 지금 건교위가 열리고 있어서 못 오신 모양인데, 그러면 행정자치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오실 때까지 보류하고요.

15.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김원웅·김태홍·강창일·신중식·이근식·장복심·이상민·정장선·이원영·김태년·노현송·원혜영·이종걸·이영순·김재홍·유선호·임종인·정성호·양형일·강혜숙·엄호성·정봉주·김성곤·선병렬 의원 발의)

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委員長 安商守 의사일정 제15항 김원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16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행자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3세 미만의 자녀로 되어 있는 육아휴직요건을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하고 1년인 육아휴직기간을 여자 공무원의 경우 3년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직 전문성 강화 및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현을 위하여 특수업무분야에 대하여 계급제를 적용하지 않는 장기재직 전문가 제도 도입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인재추천채용제로 선발된 견습직원의 직무상 행위를 공무원의 행위로 의제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준**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쪽입니다.

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과 관련하여 안 제8조 제4항에서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현행 6급에서 4급 이하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위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 사무국을 사무처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의 임명권의 범위는 사무처의 경우 4급 이하로, 사무국의 경우 6급 이하로 하는 것이 다른 위원회의 사무기구 관련 입법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사무국을 사무처로 개편하려는 규정을 현행 사무국의 규모로 환원하고 있으므로 위원장 임명권도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38·39쪽 피해신고 또는 진상조사신청의 기각 사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의2에서는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신청에 대한 기각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 중 제1호는 다의적 해석이 가

능한 등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제3호의 경우에도 기각 사유의 판단기준을 전적으로 위원회에 맡김으로써 기각 사유를 예측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1호 “사실이 아닌 경우”를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제3호 “위원회가 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은……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되지요?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행자부 차관께서는 의결만 남았으니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계속)

12.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大韓住宅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4. 韓國土地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委員長 安商守** 제12항~제14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등록제도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주기적으로 적격 여부를 검증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처리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징계처분 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를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사 업무에 주택의 매입·비축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정부 출자가 가능하도록 자본금 규모를 8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국가정책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자본금 규모를 5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리고, 원활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자산 유동화 등 다양한 부동산 금융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정부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중호**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의 구체적 위임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6항의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인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에서 그리고 안 제38조제6항의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아파트형 공장은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분양수익을 가격인하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5항은 사업시행자에게 건축사업으로 분양수익이 발생하면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가격인하 용도의 사용 예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가격인하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확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그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할 수 없는 사유를 입법취지와 형평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2항제3호에서는 안 제38조제1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38조제1항 각 호의 업무정지나 인가취소 사유 중 제8호는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인가를 받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발생할 수 있는 사유로 보고 개설신고를 할 수 없는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그런데 제8호는 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업무를 하게 하여 위반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사무소 개설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고 다른 업무정지사유에 대한 제재와도 형평이 맞으므로 제8호를 삭제하여 이를 위반하여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감정평가사무소 개설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벌칙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넷째 줄입니다.

이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도와 관련하여 법취지를 형해화 시킬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로는 첫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무를 하는 경우 둘째, 등록·갱신등록이 거부 또는 취소되었으나 감정평가업무를 하는 경우 그리고 셋째, 구비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무를 하는 경우와 등록·갱신등록이 거부 또는 취소되었으나 감정평가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43조에 의하여 처벌하면서 구비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를 보완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43조제3호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안 제47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무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을 영위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소 개설신고에서 거짓 신고를 한 자와 개설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하고 업을 행한 자 모두 개설신고제도를 침해한 자에 해당하는데 그 위반에 대한 벌칙수준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형평에 맞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는 안 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징계사유로 하는 것이 본래의 입법취지이므로 안 제43조제3호에서 부정한 신고를 한 경우를 삭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구수정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주택공사가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 명확화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주택공사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에 관한 정의규정을 인용하여 위탁기관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법에서 규정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시행일 변경 필요성에 관하여입니다.

개정안은 2월 말 현재 자본금이 7조 5642억 원이 납입되어 추가납입 가능 금액이 4358억 원인 실정을 감안하여 자본금 한도액을 현행 8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증액하면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 중에 약 7460억 원의 추가납입이 예정되어 있어서 안 제5조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다면 자본금을 증액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안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등의 자료제공의무에 관하여입니다.

안 제26조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기관 등이 토지공사에게 포괄적인 자료제공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촉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법에서 행정기관 등의 자료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환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환 위원** 박세환 위원입니다.

장관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감정인의 어떤 공익적인 성격을 강조해서 등록제도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하여튼 감정인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사적인 직업의 한 종류에 속하는 것은 맞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박세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결격사유 같은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제24조입니다. 보면 종전에는 이 법에 의한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여러 가지 처벌을 받는 경우에 감정평가사로서의 어떤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모든 법을 어겨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결격사유로 해서 그 결격사유를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같은 게 나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이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든지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든지 1년이 지나지 않았든지 이런 경우까지도 전부 다 일괄해서 이렇게 결격사유로 삼을 필요가 있나요? 이게 어떻게, 지금 공무원보다도 더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종전에 업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모든 법을 위반한 경우로 결격사유를 해 놓다 보니까 과도한 규제다, 과도한 제한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이번에 한 것은 평가업무와 관련해서 법을 위반한 경우로 이렇게……

○**박세환 위원** 아니, 그게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업무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결격사유로 삼았는데……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정부에서 마련할 때는 평가업무와 관련해서 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했는데 건교위에서 심사하면서 다른 자격사의 경우에도 당해 업무와 관련하지 않고 모든 업무로 포괄할 수가 있어서 건교부에서 그렇게 수정한 것 같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또 결격사유가 되네요. 그것을 하나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인 입법방향하고는 지금 이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또 제26조의4를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까지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흐름과는 조금 역행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고도의 규제를 할 감정평가사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라든지 이런 것이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래서 두 가지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자격사라고 하는 게 감정사 말고도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리사…… 그래서 이런 법하교의 형평성 문제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감정사가 개별 사업이기는 합지만 수용을 한다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감정사가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금액이 제가 알기로 1년에 400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강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니까 더욱더 업무와의 관련성이란지, 이래야지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26조의4를 보면 “자격등록의 취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취소’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망한 경우도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글썽 사망을 하면 이게 어떻습니까? 법률적인 용어를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셔 그런가요? 취소라는 게…… 어떻습니까? 취소 사유로 사망한 경우도 들어갑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물리적으로야 당연히 사망해 버리면 끝나지만 법적 조치로서 행정행위로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박세환 위원** 아니, 그런데 대부분 ‘취소’라는 용어는 소급효까지도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법률 용어의 용례상 취소라는 용어는 소급효가 다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사망했다, 그러면 취소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 생전에 감정평가한 부분이 전부 감정평가사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여기에서 ‘취소’는 제가 알기로는 장래효만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철회’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효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박세환 위원** 거꾸로 아니에요, 장관님?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철회가 그렇고……

○**박세환 위원** 예, 철회가 이제……

○**委員長 安商守** 어떻습니까? 박세환 위원님, 이 법은 그냥 제2소위로 넘겨 볼까요?

○**박세환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넘겨 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렇게 하면 넘겨 놓고 검토를 하지요. 시간 관계로 그 정도 하시고요.

건교부장관께서는…… 지금 건설교통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아침부터 저희 주택법하고 택지개발촉진법 때문에 점심도 안 하고 방금 여기 오기 전까지 겨우 끝내고 제가 지금 달려 왔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委員長 安商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대한주택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자본금과 관련해서 자본금 관련 조항은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다른 것은 수정안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수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면서도 왜 수정안은 안 내놓았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공포일부터 하는 것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동철 위원** 전문위원이 어디 가버렸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냐 하면 현행법상 주공의 자본금 한도액이 8조 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15조로 늘린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7조 5642억 원이 납입되어 있어서 현행법상으로 따지면 추가납입이 가능한 금액이 4358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예산이 1조 658억 원이고 그중의 70%인 7400억 원 정도가 금년 상반기에 납입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김동철 위원** 그래서 지금 시행일이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제5조의 자본금 관련 조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지금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서를 넣어서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제5조만 수정한다는 것입니까?

○**김동철 위원** 제5조의 조항 관련된 것을 부칙으로 수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런데 시행일을 조문마다 다르게 시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체계가?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많이 있습니다.

세법 같은 경우는 조문마다 따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그러면 지금 김동철 위원님은 부칙에 제5조만 공포 후 시행으로 수정하는 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전문위원은 어떻게…… 그 부분은 검토보고에 안 들어갔는가?

○**김동철 위원** 검토보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전문위원이 안 내놓았어요, 시행일 변경 필요성은 이야기하면서.

○**委員長 安商守** 어떻습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소위로 넘길까요? 소위로 넘겨봅시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하고 한국토지공사는 지금 어차피 합병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본금만 자꾸 늘려서 되겠습니까, 이것?

소위로 넘겨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검토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웅 의원 대표 발의)(김원웅·김태홍·강창일·신중식·이근식·장복심·이상민·정장선·이원영·김태년·노현송·원혜영·이종걸·이영순·김재홍·유선호·임종인·정성호·양형일·강혜숙·엄호성·정봉주·김성곤·선병렬 의원 발의)(계속)

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35분)

○**委員長 安商守** 아까 미루어졌던 의사일정 제15항 김원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委員長 安商守** 의결이 안 되었던 부분, 의사일정 제30항에서 72항까지의 법률안들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계속)

3.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정의용 의원

대표발의)(정의용·강길부·고조홍·고홍길·김명자·김문수·김부겸·김성곤·김재홍·김태년·김태홍·김혁규·김효석·노현송·박계동·박기춘·박명광·박재완·박찬숙·배일도·서혜석·신기남·신중식·안명옥·안영근·염동연·원희룡·유선호·유인태·이근식·이상경·이성권·이시종·이혜훈·임종석·장경수·전병헌·전여옥·정문헌·정성호·정의화·조경태·조일현·주승용·최경환·최재성·홍창선 의원 발의)(계속)

5. 스포츠산업진흥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

의)(안민석·강기정·강성종·김덕규·김원웅·김재윤·김태홍·김한길·김희선·노웅래·민병두·배기선·신기남·오영식·우상호·우윤근·윤원호·이광철·이미경·이시종·이인기·정청래 의원 발의)(계속)

6. 都市開發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

통위원장 제출)(계속)

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

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김동철·김태홍·서재관·신학용·양승조·유필우·이계안·이시종·장복심·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

설교통위원장 제출)(계속)

9.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

원장 제출)(계속)

10.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김동철·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정대 의원 발의)(계속)

(14시36분)

○**委員長 安商守**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과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 障礙人福祉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0. 檢疫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1. 葬事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시38분)

○**委員長 安商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이 많네요.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

안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중호** 전문위원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제6항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이 변호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는 경우 사법기관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변호인, 진술보조인의 조력 등은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 무조건적으로 사법기관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수정할 필요성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하여입니다.

안 제32조제5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강간은 장애인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는 중대범죄임을 고려할 때 이 법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의 일환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입증책임의 배분 문제입니다.

안 제47조는 차별행위와 관련된 분쟁 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한다는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부합되는 내용으로서 일반법인 민사소송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에 관하여입니다. 1페이지 하단입니다.

안 제50조제1항은 장애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법이 장애아동보호자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장애아동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아동수당을 누구에게 지급한다는 것인지 법문에 명시되지 아니함에 따라 지급대상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보호수당을 지급한다고 지급대상을 명시한 것처럼 장애아동수당에 관하여도 장애아동에게 지급한다는 표현을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관한 경과조치의 필요성입니다.

안 제29조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연구를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의 복지 및 재활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현행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확대·개편될 예정이므로 부칙에 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정의에 관하여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장기요양급여’의 정의로서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이 법안의 핵심 용어로서 건강보험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이므로 수급자 판정기준인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요건을 정의에 포함하여 용어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필요적 폐쇄명령에 관하여입니다.

안 제37조제3항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필요적 폐쇄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동일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필요적 지정취소를 규정한 동조 제1항제1호와 균형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역법 전부개정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선 모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검역을 요하는 운송수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대부분은 법제처 주관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내용으로, 이 부분은 법률의 본질적인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한글화와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 문장체계의 간결화 및 명확화 등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부분 또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22조제2호는 현행 규정을 한글화하면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2호와 제3호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허가대상을 ‘법인등자연장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로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 및 법인등자연장지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종중·문중자연장지 및 법인등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법인등자연장지의 경우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 한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종중·문중자연장지의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종중·문중에도 허가할 수 있도록

록 하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안 제16조제4항은 법인 등에만 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인이 아닌 종종·문중에게는 종종·문중자연장지를 허가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인 등에게만 허가하려는 자연장지를 법인등자연장지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위원**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 보건복지위 대안을 보면 이 법안은 2008년에 정부예산이 3070억 원 투입이 예정되어 있고 매년 예산투입 규모가 늘어나서 2030년에는 정부 예산이 9212억 원 정도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예.

○**주성영 위원** 향후 10년 동안 계산을 해 보면 약 5조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이에요. 그런데 이 법안의 성립과정을 보면 정부 법안하고 또 의원입법안이 병합 심의되어서 왔는데 여기에 비용추계서라든지 재원조달 방안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이것은 사회보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은 보험료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부 국고보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래도 국회법을 해석하면 이 법안의 비용추계서하고 재원조달 방안이 보험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첨부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그게 여기 오면서 뒤에 안 붙어서 온 모양인데 복지위에서 심의할 때는 다 붙어 있는 상태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것은 물론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서 병합심의되었는데 이 법안도 보면 예를 들면 방송사업자 등이 장애인에 대해서 자막, 수화, 점자, 해설 등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화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서 제23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제26조제5항에도 보면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 있어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이 조력을 하도록 의무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또 제27조에도 보면 참정권과 관련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장비, 또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예를 들면 선거 공보 작성하는데 점자 공보 작성 이 의무화되고 있고 만약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장애인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예산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물론 의원입법안입니다마는, 이 법안이 비용추계서나 재원조달 방안이 같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 법 시행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장애인이나 또 이 법안을 성안하는 것을 지원하는 쪽에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의견을 한번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조처들, 예를 들어서 방송 같은 경우에 어떤 시점에서 어디까지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재정투입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모법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 시행 시기를 시행령에 의거해서 조정하도록 법에 해 났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재정투입량을 현재로서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차피 정부가 지금 해야 되는 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맞춰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일반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이 법이 1년 뒤면 곧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차질 없도록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를 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법안이 너무 많이 넘어와 가지고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우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가 언뜻 보니까, 제49조를 한번 보십시오.

제49조(차별행위)가 있는데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해 놨거든요.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징역형 까지도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 좀 이례적인데요.

그런데 2항을 보니까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 네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판단한다는데 그러면 이 중에 1개만 해당되어도 악의성이 인정되는 겁니까, 4개가 다 인정되어야 악의성이 인정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악의라는 것을?

장관!

○**장향숙 의원** 4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委員長 安商守** 4개가 다 있어야 돼요?

○**장향숙 의원** 예.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차별이 고의적이고……

○**장향숙 의원** 악의적이고 거듭되고 반복되고 이런……

○**委員長 安商守** 지속성 및 반복성도 있어야 되고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다 어느 정도 크고 이런 겁니까?

○**장향숙 의원** 예.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여기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만 되면, 나도 펄쩍 보니까 이게 ‘차별의 고의성’ 하면 고의성만 인정된다 해 가지고 만일 징역형까지 준다면 이것은 좀 심하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그렇게 명백히 하는 것이 좋겠다……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전부

가 들어가야 1, 2, 3, 4항을 다 우리가 고려한다는 뜻이니까—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쳐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예, 저희는 동의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다음에 이 법안에 관해서는 지금 장애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열망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데 너무 신중하지 않는 부분은 없었는지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검토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예, 저희가 정부 내 입법도 추진하고 있었고 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차별금지법 일반 속에 넣어서 할 것인지를 두고도 여러 해 동안 정부 안팎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부 내 입법 절차를 진행해 나가다가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속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오래 논의했고 여러 차례 진통을 거쳤던 것이어서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정부입법으로 할 경우에는 각 부처 간의 의견들을 종합하잖아요. 법제처도 가고 그다음에 각 부처의 의견도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법안도, 우리 의원입법에서 가장 문제가 그거거든요. 각 부처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안 된다는 것……

그러면 각 부처의 의견은 다 수렴이 된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100% 다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차별시정기구를 어디에 둘 것이냐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정부 내에서 이루어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얘기들이 대체로 다 종합된 것으로 반영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정부 내 의견들도 거의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예.

○**委員長 安商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뜻, 저도 법안을 미리 보고 들어온 게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언뜻 보니까 안 16조를 신설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조성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산림 등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자연장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해 놔는데 안 16조를 한번 봅시다.

어떻습니까? 화장하면 지금까지는 납골당에 안치를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수목, 나무 밑에 묻어두거나 이렇게 해서 장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이럴 경우에도 나무를 대단위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다 하는 겁니까? 사실 자연장지라든지 공설 자연장지는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합니까? 마찬가지로 옛날 납골당처럼 그런 식으로 시설이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작은 규모로 하는 것은 민간에서 일정한 행위규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큰 규모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하게 산림법이라든가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제를 함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대개 이렇게 하거든요.

수목장이라 한다면 그냥 나무 밑에다 뿌려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다 묻어놓고 무슨 표를 하고 이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여기도 유골을 묻은 나무에 번호표식이나, 그러니까 후손들이 어느 나무 밑에 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그 이외에는 성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체 못 만들게 규제를 다 담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알았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주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이 법안을 보면 지자체가 화장시설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예, 그렇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런데 현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현실은 화장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주성영 위원 지자체마다 화장시설 확보 의무화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겠느냐? 화장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용감한 지자체도 지금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국가에서 부지 확보나 시설 건립 등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규정도 이 법안에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그것은 지금 규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예산 배정을 이 분야에 너무 적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측면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른바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적절한 터를 확보를 못 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화장시설이 전국적으로 부족합니다.

○주성영 위원 좋아요.

여하튼 지자체에다 화장장 설치 의무화를 하면서 이 법안에 그러한 데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근거규정은 이미 36조에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재정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될지를 좀 정밀히 보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30년까지 내다보는 국가 차원의 화장시설 설립계획에 대해서 수급조사하는 용역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정안 제17조제3호를 보면 문화재보호구역에는 묘지 등 설치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예.

○주성영 위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경우는 대부분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찰지역의 경내나 또는 사찰림에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허용되고 있는 자연장의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그 문제는 합리적이라

고 생각하고 저희가 불교계하고 계속 대화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 오던 것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부당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이 법안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사실 불교에 보면 사리탑을 만들고 요즘도 고승 대덕들이 돌아가시면 우선 화장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리가 나왔을 때 사리탑 안치하는 게 이 법안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사찰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시설에도 보면 수렵장, 수목장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는 문제, 이런 것도 다 검토가 됐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예, 제17조제3호 같은 경우가 저희가 사찰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이고요. 실태조사나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장묘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의 대화도 충분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성영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한계와 사찰이나 종교시설과의 이해관계 또 그동안의 관습과 이 법안과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다음에 박세환 위원님!

○박세환 위원 박세환 위원입니다.

저도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무연고 묘에 대한 처리 문제가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도덕관념에 배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이런 차원에서 보면 무연고 묘의 처리 문제를 법률적으로 꼭 잘 정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법을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장관님 말이에요. 지금 묘에 대해서 연고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연고자들의 묘에 대한 권리 측면보다는 오히려 어떤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게 이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주된 관점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예, 그것도 포함되었습니다.

○박세환 위원 어떤 권리로서 관리하고 지키고 수호하고 이런 것은 민법규정이란지 이런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연고자를 규정하는 주된 이유는 이런 사람이 없을 때 시체라든지 묘라

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에 주된 관심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법 제2조제16호에 “연고자” 이래 가지고 죽 열거를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순위가 무슨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해 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녀하고 자녀 외의 직계비속을 구별해 놨고요, 직계존속도 보면 부모하고 직계존속은 순위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해 놨고요.

나는 이렇게 순위를 분리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없었을 때의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사망하기 직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를 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치료·보호기관의 장 이런 사람도 다 연고권자로 보고 또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까지도 연고권자로 본다면 이게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런 규정들이 발목을 잡는 것 아니에요? 무연고 묘에 대한 처리라든지 무연고 시체에 대해 도덕관념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처리하려면 연고자의 범위를 오히려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그런데 저희……

○박세환 위원 법률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제2조제16호에 연고자들을 죽 나열한 다음에 행정기관, 치료·보호기관장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바항까지 연고자가 없는 경우의 장례에 대해서 제12조의 처리규정에 지금 다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박세환 위원 그러니까 치료기관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무연고자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그렇습니다. 무연고자에 해당……

○박세환 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연고권이 있는 것처럼 법률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부모 이런 사람들 연고권과 똑같은 식의, 어떤 보호를 위한 식으로 해 가지고 나열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경우 무연고 시신 처리라든지 이런 규정이 오히려 적용되어야 될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그러니까 가에서 아가

지 사항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그래서 바의 형제·자매까지 없을 때는 지방행정기관장이라든가 의료기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박세환 위원 형제·자매까지 없으면 무연고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그렇습니다. 무연고가 되는데……

○박세환 위원 그런데 연고자로 행정기관 또는 보호기관의 장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그런데 그렇게 안 해 놓으면……

○박세환 위원 무연고 처리라든지 무연고 묘라든지 시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것은 오히려 삭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삭제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연고자가 바항까지 없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가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지 않으면……

○박세환 위원 아니, 나중에 가서 사실상의 처리권자로서 행정기관이 등장하는 거지 연고권자로서 등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무연고 묘에 대한, 시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빼야 되는 것 아니냐?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노인정책관 손건익 위원님의 말씀이 총론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각론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노인정책관 손건익 노인정책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총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보호기관이라든가 시장·군수·구청장을 연고자라고 명시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보호시설에서 수용보호를 받으시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서 왜 돌아가셨느냐 하는 문제가,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호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분에 대한 소위 말해서 연고자로 해서 일정한 기간 관리토록 저희들이 하고 있

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박세환 위원 이런 사람은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행정기관이라든지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연고가 없는 시체라든지 이런 묘에 대한 처리권자로서 도덕관념에 기인한 시신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주어지면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을 왜 연고자에다 집어넣습니까? 나중에 가서 우리가 발목이 잡힌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개장이라든지 이런 요건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노인정책관 손건익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무연고 묘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연고자가 있었는데 장시간 방치됨에 따라서 완전히 묘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행려병자 같은 분이 돌아가서 가지고 연고자가 없어 가지고 이제……

○박세환 위원 이것 소위에서 저랑 한번 검토해 봅시다.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노인정책관 손건익 예, 알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어차피 소위로 넘길 거니까 그렇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 과제였습니다. 그래도 기대치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후퇴한 법안이고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이것이 장애인 권익 향상에 진일보한 계기가 되는 만큼 법사위에서 소위에 넘기지 마시고 오늘 통과를 시켜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법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3조의 개인에게,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의무를 지우는 이런 것들은 모범에서 한계를 정하셔야 됩니다.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 보세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사용료·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등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런 입법형식으로 하시면 위헌입니다. 이렇게 해 놔서 위헌 나 가지고 나중

에 이것 잘못된 것이다 해서 국민들이 돌려달라고 그러면 이의신청기간 90일 넘어서 이의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못 돌려주겠다고 정부에서 강짜 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제25조 보세요.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입니다.

사설묘지 등에 관한 관리금의 적립, 이것도 등등의 시설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해야 한다. 그리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관리금의 용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돈 안 준다고 정부에서 강짜를 부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90일 내에 이의신청 안 하면 국민들 탓으로 돌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그러면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됩니까?

○**이상민 위원** 모법에 한계치를 정하셔야 됩니다. 모법에 상한선을……

○**委員長 安商守** 모법에 한계치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기한 것으로 하고 우리 소위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그런데 한 가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민 위원** 정부에서요, 장관도 오시고 공무원들도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 주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만들어 와서, 장관이 와 얼렁뚱땅 넘어가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되고 나중에 구제받으려면 이의신청기간 넘겨서 못 받는다고 그런 소리나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그런데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이 점에 대해서는 참고삼아 소위에서 논의하실 때, 지역마다 시설마다 사용자·관리비의 수준이 전부 다 다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해야 됩니다. 모법에서 상한선을 정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해 놨습니다. 그게 헌법정신이고요.

○**委員長 安商守** 소위에서 그 부분은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주성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장애인복지

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예산 문제를 얘기했지요?

○**주성영 위원** 예.

○**委員長 安商守** 그런데 그 예산을 아까 보험금에서 낸다고 그랬습니까?

○**주성영 위원** 그것은 노인장기요양법…… 보험금이 들어가지만 보험금 이외에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그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법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장애인복지법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드는 내용 이외에 활동보조인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연간 국비, 지방비 합쳐서 약 400억 원 규모로 시작을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은 굳이 법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장애계에서 이 제도를 좀더 안정적으로 앞으로 발전시킨다는 정부의 약속만으로는 믿기 어렵다 해서 법에 근거규정을 두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이것은 기획예산처라든지 이런 데와의 협의를 거친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예.

○**委員長 安商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20항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해서는 아마 장애인 각 단체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오늘 통과가 되어서 아주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21항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놓아서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3.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5.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5시19분)

○**委員長 安商守**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 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중호** 전문위원입니다.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내용 대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규정을 보다 알기 쉽게 개정하면서 오히려 현행 규정의 의미를 불분명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구정리가 필요한 내용은 유인물 중 주서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대부분 법제처 주관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개정안은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8조 제5항 및 제6항의 인용조문의 잘못을 바로잡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경미한 자구정리가 필요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운용하는 구급차, 철도차량 등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안에 현재 제2소위에서 심사 중에 있는 동명의 또 다른 법률안의 심사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개정안의 내용 중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응급처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하는 입법적인 조치가 전제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 이미 우리 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동일한 제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구호자 또는 응급처치자 등의 면책범위 등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심사 중에 있으므로 이들 두 법률안의 병합심사 후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약간의 자구정리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장관님, 약사법 개정안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게 약사·한의사 면허를 부여해도 실제 운영에 지장 없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파산선고 했더라도 생업에 종사하는 길은 열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민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國民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효석·장향숙·백원우·박상돈·안상수·심재덕·김재윤·안민석·양형일·강기정·정성호·서혜석·김종률 의원 발의)

2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장복심·변재일·배기선·박상돈·이종걸·조정식·장향숙·배일도·한광원·주승용·김교홍·고경

화·강길부·이기우·이시종·백원우·우제창·김낙성·김형주·김영주·이은영·노웅래·장경수·양형일·김선미·강혜숙·김영춘·이원영·이광철·김낙순·장영달·심재덕·이계안·이근식·이미경·유재건·강기정·양승조·윤호중·이경숙·이경재·정진섭·이인영·홍미영·노현송·제종길 의원 발의)

28.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현애자·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 의원 발의)

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김진표·김선미·김춘진·구노회·우제창·문학진·김낙순·장향숙·최재성·김덕규·백원우 의원 발의)
(15시25분)

○**委員長 安商守**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26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발의자를 대표해서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법제사법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소득 외국인노동자들이 낸 국민 연금을 출국할 때에 반환해 주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지급 여부는 상호주의 또는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즉 외국이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제도를 가지고 한국인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우리도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상호주의를 채택한 인도네시아 등 30개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캐나다 등 3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만 내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국가가 대부분 약소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 문제는 상호주의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2006년 11월 17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내면서도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노동자 중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근로자 4만 4424명이 낸 416억 9949만 원의 국민연금에 대하여 이들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이미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3만 6145명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하여도 이 법을 소급적용하여 이들이 낸 345억 원도 되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에서 100만 원 정도의 월급으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 문제는 상호주의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합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민연금만 내고 반환받지 못한 채 대한민국을 원망하면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27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장복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심 의원** 반갑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

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공무 중 순직한 이종욱 WHO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국민으로는 처음으로 국제기구인 WHO의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3년간 세계보건 증진을 위한 혁혁한 업적을 쌓았고 국위를 선양한 바 있습니다. 특히 1983년 WHO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에이즈, 소아마비, 말라리아 등 질병으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고인의 생전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고 이종욱 WHO 사무총장과 같이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국제사회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하여 동 재단의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며 둘째, 중고 의료기기를 수리 정비해서 북한과 개발도상국 등에 지원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공립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의 결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립병원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여 중고 의료기기를 수리 정비하여 북한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사업에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을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립병원의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립병원의 중고의료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정부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규정은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서 제29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중호** 전문위원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9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약간의 자구 정리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만, 재정경제부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행정자치부의 경우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의료기사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를 제외하는 내용으로서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축사법 등이 현재 법안심사제2소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대체적으로 통과될 법안만 골라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조순형 위원님 먼저, 조순형 위원님 다음에 선 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舜衡 委員**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대해서 재정경제부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다는데……

전문위원, 재정경제부의 의견이 됩니까? 될 하겠다는 거예요? 아세요?

○**전문위원 임중호**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부에 의견을 구했는데요,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趙舜衡 委員**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전문위원 임중호**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趙舜衡 委員** 뒤에 근거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거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품’이라는 것이 뭐예요? 국유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전문위원 임중호** 국유재산 이외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얘기하겠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러면 아주 대단히 광범위한 것으로군요.

그다음에 행정자치부도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그랬는데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문위원 임중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에 의견을 요청했는데요, 그쪽에서 중고 의료기기의 특성을 감안한 물품의 직접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예산처 등과 관련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구요.

행정자치부에서는 메일로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하는 보건복지부로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아마 의견 수렴이 안 된 모양이지요? 안 된 거예요?

○**장복심 의원** 장복심 의원입니다.

저도 지금 재경부나 행자부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국가적인 손익이 가는 것이 아니고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것 하나하고, 그 근거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우리나라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이미 쓰지

않는 의료기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형식적으로는 남지만 결과적으로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뭐랄까요? 그냥 재워 두고 있을 그런 의료기기들을 고쳐 가지고, 북한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기기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의료 선진화가 되어서 계속 기계들이 발전하니까 과거에 쓰던 것을 쓰지 않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양도받아서 수리할 것은 조금 더 수리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이런 후진국에 지원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올리면 더 명료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趙舜衡 委員 그러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기념사업 얘기는, 실제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 이종욱 박사의 성함이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브랜드처럼 통용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국가적으로 너무 손실이 되니까 국제보건의료재단의 영문 명칭에 ‘Lee Jong Wook Foundation Korea’ 이렇게 해 가지고 이종욱 박사의 네임 브랜드를 쓰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영문 약자로 그냥 번역해서 쓰는 것보다 훨씬 한국의 재단이라는 것을 잘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쓴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구충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장복심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다른 ODA보다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2개를 묶어서 생각하시면, 이 법 개정의 취지는 거기에 있다고 정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趙舜衡 委員 아니, 그런데 여기는 그냥 물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징을 좀 하면 되잖아요? 특징을 안 하니까 재정부는 국유재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양여할 수 없다, 그런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보건의료재단이 기본적으로 의료 분야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趙舜衡 委員 물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나

법문은 그렇게 안 된 모양인데……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사실 저도 못 듣고 있다가 갑작스레 지금 봤습니다마는 정부 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러면 오해가 없도록 법문을 정리하든지 그랬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부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당연한 것이지요. 그냥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그래왔으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지요.

○장복심 의원 명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趙舜衡 委員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복심 의원 차구수정을 좀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면……

○이주영 위원 무상 양여를 받겠다는 것이 국공립병원에서 지금 안 쓰고 있는 의료기기들입니까, 현재 사용 중인 의료기기들입니까?

○장복심 의원 아예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국공유 재산이면 아무리 중고품이라도 또 매각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물품들이겠네요? 그게 전혀 무용지물이라 무가치 물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장복심 의원 시간이 갈수록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요.

○이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돈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인데 그것을 무상으로 달라고 그러니까, 유가 채물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관리하고 있는 소관 부처에, 그게 정부에서 여러 가지 회계 관리하는 데도 관계되고 하는데 그것을 소관 부처의 양해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의결해 가지고 그렇게 넘어 오니까 각 관계부처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이주영 위원님, 이것은 그냥 강제로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준다고 할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재단법에 준다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주영 위원 어쨌든 이것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놓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갖고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복심 의원**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안 쓰는 기계를 주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팔려고 그래도 실수요자가 없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하여튼 그 조문을 조금 정리해 가지고 통과시키면 되니까 소위로 일단 넘겨 놓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 위원** 선병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께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국민연금법이 법사위에, 여야가 쟁점이 되는 내용은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인데, 전문위원은 어때세요? 그 법하고 관련 없이 국회법상이 법이 통과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임중호** 2개의 법률이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심사 중에 있는 국민연금법을 먼저 처리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또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선병렬 위원**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런데 한 회기 내에, 만일 이미 계류되어 있는 국민연금법을 이번에 처리한다면 한 회기 내에 2개의 국민연금법이 처리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혼동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미 계류되어 있는 국민연금법에 이것을 흡수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문을?

○**양승조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委員長 安商守** 예.

○**양승조 의원** 개혁법안 있지 않습니까? 계류 중인데, 그 법안이 3월 6일에 여야 합의로 여기서 통과될 때 이게 조금이라도 장애가 될 것 같으면 통과시켜 놓고 4월로 미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전에 우리가 사안을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도 서로 다를뿐더러 같은 회기 내에 제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된 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3월 6일에 통과될 때 개혁법안에 지장이 있으면 통과시켜 놓고 본회의의 통과는 4월에 시켜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만일 통과된다 하더라도 전체 회의에, 아니 통과되더라도 본회의에 보내지 않고 있으면 되잖아요?

○**전문위원 임중호**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것은 통과가 안 되는 것이지, 계류시켜 놓는 것이지.

○**선병렬 위원** 위원장님,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 지금 이미 상정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이 통과된다면 통과될 때 삼입해서 같이 하나의……

○**委員長 安商守** 그것을 하기는 힘드니까……

○**선병렬 위원** 우리 법사위에서는 또 그것이 불가능한가요?

○**박세한 위원** 불가능합니다.

○**양승조 의원** 그렇게 하려면 4월에 하는 것이 낫지.

○**전문위원 임중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개의 법안을 저희가 통합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고요. 다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 주시면 본회의에 회부하는 문제는 시차를 두고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지.

○**전문위원 임중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데 시차를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승조 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安商守** 예.

○**양승조 의원** 다름이 아니고 만약 여야 간에 합의가 되면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4월에 처리해도 좋은데요. 만약 그것이 혹시라도 통과가 안 되면 사실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내일이라도 출국하는 사람이 자기가 낸 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한시가 급한 법이기는 한데 지장이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통과시켜 놓고서 본회의의 통과만 미뤄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선병렬 위원** 양승조 의원님의 요청을 정리해보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연금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이고……

○**양승조 의원** 그렇지요.

○**선병렬 위원** 그것이 통과되는 데 지장이 있으

면 개혁 연금법이 더 급하니까 그것을 먼저 처리해 주고 이것을 뒤로 미뤄 달라?

○양승조 의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 의견입니다.

○선병렬 위원 좀 복잡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보건복지위원회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서 제2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을 많이 했네요.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까.

이번에 심사할 의사일정 제30항에서 제63항까지 34건의 법률안은 4개 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모두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안들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들에 대한 심사 방법은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다음 법제처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제처장 나오셨습니까?

○법제처장 김선욱 예.

○委員長 安商守 나오셨네요.

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된 법안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회에서 용어 이외의 내용을 수정하여 대안으로 제출한 법률안들은 제외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0. 對外貿易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3. 鑛業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발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中小企業基本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7.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9.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0. 농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1. 林業및山村振興促進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畜産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3. 海運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4.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5. 漁場管理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6. 水産業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7. 港灣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8. 경륜·경정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9. 觀光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0. 국민체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1. 文化藝術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2.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3.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5. 傳統寺刹保存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6. 鄉校財産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7. 먹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8. 소음·진동규제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9. 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0. 廢棄物管理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1. 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2.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3.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50분)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대외 무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1항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32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3항 광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4항 발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5항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6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7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38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9항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0항 농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1항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42항 축산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3항 해운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4항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5항 어장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6항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7항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8항 경륜·경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9항 관광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50항 국민체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51항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52항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53항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54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55항 전통사찰보존법 전부개정법률안, 제56항 향교재산법 전부개정법률안, 제57항 먹는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제58항 소음·진동규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59항 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60항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제61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62항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6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3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서 제63항까지 3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대외무역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자구를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및 노동부 등 6개 부처 소관 법안들입니다.

그간 법률의 용어나 표현 등이 이해하기 어렵고 어문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어문규범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법령 한글화를 추진하여 오다가 근본적으로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작년부터 2010년까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 1160여 건 모두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 법안들은 그 1차년도 결과물들입니다.

다음, 검토고보서 2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제출된 법안 34건에 적용된 정비 기준과 검토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원칙은 알기 쉽고 의미가 뚜렷하며 어문 규범을 충실하게 지키고 자연스러운 법령 문장이 되게 하도록 하고, 표기의 한글화를 원칙으로 하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와 관련해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지나친 축약어 등을 우리말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또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수정하는 한편 어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복잡한 문장은 자연스럽게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 등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도록 하는 기준을 가지고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비와 관련해서 먼저 정비 기준은 법령을 전체적으로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한 작업에 포함되는 요소를 망라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인 간결성과 함축성 또한 필요하므로 너무 풀어 쓰거나 띄어 쓰는 등 한글맞춤법 등에

엄격하게 따를 경우에는 오히려 혼동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본질적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한글화와 관련해서 우리말의 70% 이상이 한자어이고 법령에는 간결성과 함축성을 위해 사용이 불가피한 용어를 한글로만 적을 경우에는 의미 전달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렵거나 혼동의 여지가 있는 한자어는 정비 기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각 개정안은 다음 표와 같이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으로써 의미 전달의 혼선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변경과 관련해서, 용어의 변경은 밑에 예시하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자어를 쉽게 바꾸고 일본어 투의 용어나 표현을 우리말의 표현으로 바꾸며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를 풀어 쓰는 내용들입니다.

예시한 자세한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 정비와 관련해서 각 개정안은 그 외에도 번잡하고 어려운 표현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벌규정은 법인과 개인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여 이해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시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쪽 마지막 5. 수정 필요 내용과 관련해서 각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관련 법안의 변경이나 또 같이 제출된 다른 개정안을 일괄적으로 인용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가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아니하고 계류되어 있는 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 조문을 원상태로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현행에 맞추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등 몇 가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에 첨부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이하에 보시면 그 부분을 이유와 함께 수정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알기 쉬운 법령사업의 일

환으로 법령 개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인용 조문 등 관련 법률들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개정법률안과 같이 소관 상임위 심사 절차에 의하다 보니까 일부 상임위에서는 내용 수정을 하는 대안으로 의결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상임위는 심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용 조문도 수정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 수정이 아닌 단순한 알기 쉬운 법령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 법안심사 절차보다 우리 법사위원님 중심으로 심사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일괄 심사하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위원** 법제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34개를 상정한 것이지요?

○**법제처장 김선욱** 예.

○**노회찬 위원** 작년 언제부터 이 작업을 한 것입니까?

○**법제처장 김선욱**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부터 바로, 연초부터 시작됐고요.

○**노회찬 위원** 그게 몇 월부터지요?

○**법제처장 김선욱** 준비작업을 거쳐서 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7월부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회찬 위원** 올해는 지금 몇 건 할 예정이십니까?

○**법제처장 김선욱** 올해는 지금 250건 예정인데 올해 작업은—이게 2006년 작업이지요—2006년보다 저희가 조금 더 속도도 낼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심사기준이 마련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정부 입법계획과 연동을 하는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한 250건 중에서 170여 건은 정부 입법계획에 들어 있는 것,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만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한 80여 건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지금 법제처 내의 어떤 부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법제처장 김선욱** 지금 법제지원단의 법제정책

팀이 책임을 지고 있고 마지막 작업에서는 법제 관실 모두가 소관 부처의 법령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별도로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까?

○**법제처장 김선욱** 저희 위원회에 국어전문가들이 계시는데 국어전문가를 작년에 2명 채용했고 올해는 계약직으로 5명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노회찬 위원** 대외무역법 제2조제2항에 보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한 서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체’의 뜻이 됩니까?

○**법제처장 김선욱** 제가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좀 하게 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 뜻을 아는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의 제2항 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가·나·다의 ‘다’호에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한 서류’, ‘화체’의 뜻을 아는 분이 와서 설명해 주세요.

○**산업자원부무역투자정책본부무역투자진흥관실 무역정책팀행정사무관 김재하** 산업자원부의 김재하 사무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화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 이런 것을 물권화한 서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安商守** 말하자면 채권이 증권화할 때 법률용어로 ‘화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 아주 어려운 한자말인데……

○**노회찬 위원** 채권이라는 게 하나의 권리를 의미한다면 그 권리가 명기되어 있는 서류를 뜻하는 것입니까?

○**산업자원부무역투자정책본부무역투자진흥관실 무역정책팀행정사무관 김재하** 예, 맞습니다.

○**노회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화체한 서류’라고 그대로 한문 병기만 해도 됩니까? 이 정도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제처장 김선욱**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 이유는 ‘화체한 서류’ 이게 아마 이 법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다른 관련법이 있을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소관 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이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합의하지 못하면 개정에 대해서…… 그럴 때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내용에 있어서는 어려운 단어이고 한

글로만 할 수 없을 때 저희가 병기하는 방법을 부분적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나아간다면 이 자체를 좀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 주는 작업이 한 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이게 지금 법률을 전문으로 공부한 분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화신’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 ‘화체’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단어인데 이런 것을 고치라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운동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특정 부처에서 고집한다고 해서 바로 수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알기 쉬운 법령 작업을 지금 5개년 계획으로 2010년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제2차, 제3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또 자꾸 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법제처장 김선욱** 한문을 병기한 용어, 그다음에 이미 그 분야에서 자리 잡은 용어들에 대한 한계는 이번에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전형적인 예를 지금 노 위원님께서 발견해 주셨는데요. 이런 게 이번 작업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安商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병렬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安商守**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 위원** 일단 그간 법제처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2월 21일 민법 전부개정안을 한글화 민법으로 작업해서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로서의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법이 새롭게 한글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법제처의 작업에만 의존할 것인가, 한글화된 법률에 대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일괄된 기준을 가지고 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체계적인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라서 이 작업을 해 나가는 법제처나 또 이 이후에 사실 많은 의원들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단순히 정부의 사업으로만 두지 않고 개별적인 발의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회찬 위원님께서 제기한 저런

관점에서 법제처의 한글화 작업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 그래서 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용어만 바꾸는 그런 개정안도 개별 의원입법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법률 한글화 사업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이라는 책자를 주셨는데, 그리고 그 뒤에 부록으로 법령용어순화편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법제처에서 한 작업은 이 부록3 법령용어순화편람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다 고쳐진 것입니까?

○**법제처장 김선욱** 예, 그렇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런데 지금 언뜻 봐도 안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민법 개정안을 내면서 우리 보좌관들하고 한참 토론을 한 게 있는데 변제한다는 말, 이 조문이 그대로 민법에도 나오는데 ‘완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고쳤더라고요. 이렇게 고친 것은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한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도 ‘완제하지 못하면’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면’으로 고쳤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자의 용어순화편람에는 ‘변제하다’를 ‘갚다’ ‘물다’ 이렇게 고쳐 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완전히 갚지 못하면’ 이렇게 고치지 않았나요? 저도 ‘완제하지 못하면’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면’으로 하지 말고 ‘완전히 갚지 못하면’ 이렇게 고치자……

○**박세환 위원** ‘다 갚지 못하면’.

○**선병렬 위원** 그렇지, ‘완전히’나 ‘다 갚지 못하면’…… 그랬더니 이것을 그간 여러 가지 사회적 통념이나 법률적인 연속성 이런 것을 위해 그렇게까지 고치면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완전히 갚지 못하면’으로 고치지 못하고 제 뜻과 달리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고쳤어요.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용어순화편람대로 왜 이렇게 과감하게 고치지를 않으시나요? 이대로 안 고쳐진 게 더러 있는 것 같은데요.

○**법제처장 김선욱** 지금 그게 원칙적인 기준으로 저희가 만들었고 법안에 따라서 그 기준이 충분히 협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분

적으로 원래대로 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병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민법안에 대한 것 저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 소관 법령들에 대해서도 아마 좀더 빠른 일정을 가지고 민법·형법·상법에 대한 개정 준비를 법무부도 좀 서둘러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한 것, 저희들도 우리 기준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국회의 의사국 의안과의 법제팀, 그리고 법제실, 또 법사위원회의 전문위원실하고의 협력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또 함께하는 국회 쪽의 입안 심사 기준과 저희들의 기준이 거의 공동작업이 되다시피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작업, 의원입법들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작업하고 저희들 정부 입법에 대한 작업들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선병렬 위원** 그런데 법령용어순화편람대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법제처장 김선욱** 예.

○**선병렬 위원** 법제처에서 나온 법령용어순화편람을 보면 상당히 전진적으로 했는데, 이게 순화 목표인데 순화편람을 이렇게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한글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안 한 것이 몇 군데 보니까 많이 있어서 앞으로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 하다 보니까 그간의 법체계라든가 법률용어 이런 것에 너무 동떨어지게 고쳐서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 같아 두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쫄쫄쫄하고 이렇게 고쳐 놔서 되겠나 싶은 게 있는데 좀 과감하게……

법령용어순화편람이 한번 나오면 이 순화편람을 많은 분들이 참고할 것입니다. 일반 법조인들도 참고할 것이고 학교에서도 참고할 것이고 저희 의원들도 참고할 것이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작업할 때는 이대로 해 줘야 이것이 또 하나의 기준이 돼서 새로운 통일성이 형성될 것이다, 순화편람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법제처에서 낸 개정안을 이렇게 안 해 버리면 나중에 법제처가 자기 자신의 기준을 오히려 흔들어서 정말로 혼란에 빠진다 이 말이지요.

새롭게 개정하는 과정에서의 다소간 혼란은 우리가 어쩔 수 없고 빨리 한글화 작업을 통해 새로운 통일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법제처가 작업해

놓은 순화편람대로 안 해 버리면 이중 삼중의 혼란이 또 생겨 버린다, 이것 각별히 말씀드립니다.

○**법제처장 김선욱**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선병렬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를 들자면 민법에 ‘변제’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꿔 버리면 그것하고 또 균형도 안 맞고, 이런 것을 우리 전문위원들이 대개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병렬 위원** 그래서 저도 ‘변제’라는 말을 그냥 뒀는데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에는 ‘갚는다’ ‘물다’라고 해 놓고 고칠 때는 그냥 또 그대로 ‘변제’로 놔두어서 그것이 나중에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온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니까 일단 통과시켜 드리고……

○**박세환 위원** 2소위로 넘기는 게 어떻겠어요?

○**委員長 安商守** 너무 법안이 많아서 우리 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다 미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통과시켜 주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32항, 제37항에서 제41항, 제46항과 제47항, 제49항, 제53항에서 제55항, 제58항에서 제60항, 제63항, 이상 1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제33항에서 제36항, 제42항에서 제45항, 제48항, 제50항에서 제52항, 제56항과 제57항, 제61항과 제62항, 이상 1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0.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최병국·정갑윤·윤두환·김기현·정몽준·권철현·유기홍·김영춘·이경숙·민

병두·김영숙·김교홍·최재성·이은영·정봉주·정문헌·이군현·안민석·이시중·박기춘·홍창선·박상돈·김양수·한광원·조경태·문석호·신학용·유인태·이상호·박명광·오제세·변재일·노영민·유필우·김혁규·홍재형·이미경·김근태·양승조·정종복 의원 발의)

71.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발의)(이상민 의원 외 23인 발의)

72. 유네스코活動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12분)

○**委員長 安商守**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강길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72항 정부가 제출한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70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발의자를 대표하여 최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소관부터 먼저 합니다. 정부 위원회가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崔炳國 議員** 울산 남구갑 출신 최병국 의원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商守** 감개무량하겠습니다.

○**崔炳國 議員**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법률안은 울산광역시의 전 국회의원들이 강길부 의원을 대표로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2월 27일 법안명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의결해서 우리 위원회에 송부된 것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전국 최초·최대의 산업도시이고 우리나라의 조선, 석유화학산업 등의 중심지로서

산업수도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국립대학이 없고 종합대학도 단 하나밖에 없어서 울산지역 고교졸업생, 작년도에 1만 3909명 중 70% 이상이 외지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시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연간 약 5000억 원 이상이 가중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고등교육 여건이 대단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러기에 국립대학 설립은 지난 30여 년 동안 110만 울산 시민들의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2000년도 16대 총선 때부터 국립대 설립을 공약하였고 지난 2002년 한나라당과 민주당 각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대학 통폐합의 구조조정 속에서도 대학 수급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난 2005년 9월에 울산광역시와 협의해서 2009년 3월 개교 목표로 대학 설립을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국회는 지난해 건설비 2500억 원을 BTL 예산으로 통과시켰고 울산광역시는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는 국립대학법인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금년 8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90% 정도의 토지를 매수했으나 잔여부지 보상 마무리 및 대학 부지의 적시 제공을 위한 근거 법령이 없어서 더 이상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안의 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법인의 설립 목적을 명시하고 총장 선임, 이사회 설치·운영, 감사 선임 등 대학법인의 주요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교육의 후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법인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와 울산광역시와의 협력에 따라 학교 부지는 울산광역시에서 확보하기로 한 만큼 이와 관련한 무상양여 및 토지 수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넷째, 총장은 4년 단위로 경영성과 목표를 설

정하고 매년 그를 반영한 대학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그 실적을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이 법률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대학의 개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제7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제7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오늘 교육부장관은 어디가셨습니까? 차관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잠깐 행사가 계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정부가 제출한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네스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위원의 위촉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네스코 활동에 관계된 국제기구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같은 기관도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적 기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셋째, 기타 감사의 업무와 신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준**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명칭이 수정되어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뀌어 올라왔습니다.

유인물 29쪽입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적용조항 삭제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항에서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에 관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통령령이므로 이 법에서 다른 법률의 하위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면 고등교육법에 따르도록 한 동조 제2항에 그 설립에 관해서도 고등교육법을 적용하도록 수정하고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36쪽입니다.

자본금 처분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범위 제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3항에서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자본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함으로써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유인물 38쪽입니다.

시행일 규정과 관련하여 안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 마련 등 법 시행을 위한 준

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보완하고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부지대입 외에 설립준비 행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도 법안 명칭이 수정되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수정되어 올라왔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몇 가지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본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또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서 언급한 의무교육의 무상성 위반 및 평등의 원칙 위반의 내용을 반영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결정의 장래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과 그 내용이 상이한 면이 있고 조세·부담금 행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헌결정된 다른 부담금의 소급처리 요구가 예상된다라는 이유에서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의 이견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유인물 30쪽입니다.

위원의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결격사유 부분입니다.

안 제13조제3항제2호에서는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결격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 내용 중에 위원 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잠시…… 여기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해서는 굉장히 지금 교육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 방에 전국의 교육감님이 전부 다 찾아와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던데 교육부의 기본 입장을 밝혀 주시면 여기에서 토론을 하는데 제안자하고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 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저희들은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법적으로 소급입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법 운용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가지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지자체가 돈을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지자체의 초·중등학교 재정 지원의 길을 막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재정 확보에 엄청난 어려움이 아주 명확하게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점에 비추어서 교육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런데 이 법안은 교육위원회에서는 가결해 가지고 넘어왔고 정부 부처인 교육부에서는 반대하고 이래 가지고 참 미묘한 문제를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다루게 됐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을 이해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인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임종인 위원 교육부총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이라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말씀을 들으니까 소급입법이라는 점하고 재정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그러나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주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잘못 거둬들인 돈은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일반적으로 ‘잘못됐으니까 돌려준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에 정부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되돌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보다는 법사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더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소급해서 그런 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고 금지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

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본의 법체계를 흔들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종인 위원 기본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2001년부터 2005년 3월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32만 7000여 명 된다면서요, 맞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임종인 위원 그리고 6만 7000여 명은 환급을 받았고요, 이의신청을 통해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신청한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임종인 위원 그다음에 26만 명이 4000억 원을 돌려받아야 되는 것이 이 사건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임종인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분양자들은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했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임종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 사람이 낼 일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땅을 사서 내야지……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산다고 학교용지부담금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결과적으로 위헌이 됐습니다마는……

○임종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아파트를 짓는다 그래서 아파트 근처에 있는 학교의 땅을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내 줘야 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위헌이 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아파트 들어온 사람이 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택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에 주민을 끌어모으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 주택을 개발하는 업자들이……

○임종인 위원 그것은 나중에 고쳐진 것이고요. 나중에 그것은 고쳐서 현재는 아파트 개발업자가 내게 고쳐졌지요, 위헌판결이 난 뒤에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임종인 위원** 그전에는 개인 입주자들이 돈을 내다가, 얼마씩 냈느냐 하면 분양가의 0.8%를 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억 원이라면 아파트의 경우 160만 원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위헌판결이 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냈고 그다음에 이것이 위헌이 나니까 사업자에게 돈을 내라고 해서 사업자가 현재 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러니까 처음에……

○**임종인 위원** 아니, 그게 맞냐 틀리냐 그겁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처음에 그러니까……

○**임종인 위원** 아니, 맞냐 틀리냐 이거예요, 사실 관계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해석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임종인 위원** 잠깐만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입주자에게 물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임종인 위원** 잠깐만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개발업자의 분양가에 그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이 그것을 한 것이지요.

○**임종인 위원** 존경하는 교육부총리님, 현재 제가 묻고 부총리님이 답변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에 좀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부총리님 말씀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민 의원** 임종인 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듯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는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세금에다가, 더더구나 교육재정에 쓰라고 한정적으로 목적세인 교육세까지 걷고 있으니까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학교를 짓는 그 몫은 그 세금을 걷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부담금이라는 그 성격은 유발하는 그 비용만큼 상응하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식이 1명이든 2명이든 취학아동이 몇 명이든 없는 사람들이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걷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이라고 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총리께서 이런저런 얘기 하

시지만 이미 지금 2005년도 3월에 개정된 납부의무자를 종전에는 최초의 수분양자, 아파트 분양자로 했는데 위헌결정받은 것은 바로 그 법률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2월에 위낙 원성이 자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의 기미가 임박하니까 교육부 주관 정부안으로 해서 납부의무자를 개발사업자로 바꾸었습니다. 그 법률조차도 전국의 각 법원의 재판부에서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에 정면으로 배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벌써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임종인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부총리께서는 이 돈을 2005년 이전의 것을 돌려주면 이것은 소급효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민 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한번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소급효라고 한다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교육부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아마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위헌결정을 받은 이 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이미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을 누구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한 분들은 돌려받았습니다. 다만 문제된, 지금 구제를 받아야 될 분들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를 하지 못해서, 그런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한들, 설사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소급효가 있다 하더라도 그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돌려받게 되겠지만 여전히 90일 내에 이의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급효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단지 지금 말씀드린 제척기간인 행정권 우위의 반영을 두고 있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를 해야 된다는 그 기간을 못 지켜서 된 것입니다.

○**임종인 위원** 자, 교육부총리님. 우리 생각에는 도시에 인구 집중이 되고 농촌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학교가 필요 없게 되니까 농촌의 학교는 팔고 분교가 폐교되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에는 신설을 하게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특히 초등학교에 있어서 정부

가 교육비에 지금 30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학교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정부의 의무인 것이지 아파트에 거주해서 물려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슨 교통유발 시설을 했느냐, 학교유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학교 만들 땅값을 내라,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 나라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 이상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교육세까지 냈는데 그것은 발상이 매우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임종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가 재정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해서 학교 설립에 필요한 만큼 재정을 언제든지 확보하고 투자할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세제나 그 밖에 전체 국가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부가 필요로 하는 학교를 그때그때 용지를 매입해서 그때그때 세우고 하지 못해 온 것이 그동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학교와 대학의 교육 여건이 가장 열악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을 개발한 사람들이 거기서 발생하는 교육의 학교 설립의 필요에 대해서 분담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무조건 국가가 다 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종인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국가가……

○委員長 安商守 임종인 위원님, 다른 분들도 발언해야 되니까, 그 정도 하시면 충분히 전달되었으니까요. 또 다른 분들 반대 의견도 좀 들어보고 왔다 갔다 하도록 하시지요.

○임종인 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교육부총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는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모여 사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특히 백화점 같은 데, 교통체증을 유발한 경우에, 그러면 백화점의 경우에 백화점 들어서면 재벌들한테 도로를 다 만들게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요. 예를 들면 영등포역 롯데 같은 데, 신세계 같은 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학교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것을 국가가 부담하

고 주민들에게 잘못된 돈을 돌려주는 이상민 의원의 법률안이 아주 잘된 것이고 교육위원회에서 맞게 통과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법사위에서 마땅히 통과시켜서 교통을 받고 있고 억울해하는 주민들의 한을 풀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경 위원 이런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유사한 경우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환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이제까지는 없습니다.

○이상경 위원 만약 이 경우 환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4000억이 필요합니다.

○이상민 의원 4500억인데요, 그중의 1500억은 미집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은 3000억 원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 4500억인데 그중의 570억 정도는 지금 미집행으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1500억입니다, 1500.

○선병렬 위원 왜 금액이 달라요?

○이상민 의원 이것은 부총리께서 파악을 잘못 하셨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이상경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664억을 징수해서 1135억을 환급했고요, 그러니까 돌려주고 남은 잔액이 573억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될 경우에는 돌려줘야 되는 것이 3957억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액수입니다.

○이상경 위원 그런데 위헌결정 소급효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상민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슷한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 만약 그 경우에도 그러면 특별법으로 환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의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10여 년 전에 종료가 되어서 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시효제도에 이미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돌려주느냐 안 주느냐는 결국은 입법부의 입법정책적 측면에 맡겨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법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시효제도를 훼손할,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다만 시효의 범위 내에 있는 이번 사건과 같은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경 위원** 그런데 시효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것이, 그러니까 입법정책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시효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은 어차피 이 소급료가 현행법하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효 자체가 해당이 안 되고 다만 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소급료를 환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슷한 경우에. 시효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를 좀 보고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다만 존경하는 이상경 위원님께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효정지 이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택지초과부담금이라든가 초토세의 경우는 10여 년 전에 있어서 이미 법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해당이 되어서 한참 전에 경과가 되어서 시효제도의 근본을 흔들릴 정도의 입법은 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다만 최종적으로 돌려주느냐 안 주느냐는 입법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

○**이상경 위원** 아까 시효 말씀하셨는데 거기하고 똑같은 동일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시효 자체가 저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소급료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료를 인정할 수는 없지요. 예를 들면 5·18법도 소급료를 인정하지 않은 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입법정책과 관련해서 교육부총리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래서 만약에 이 위헌결정에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

가 되면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하는 데 굉장히 망설이고 아마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 되살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이 큰 틀에서 볼 때 역시 국민들의 이익에 매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상민 의원** 방어권을 좀 주십시오. 발언 기회를……

○**委員長 安商守** 또 질의 답변 하면서 하시지요.

○**이상민 의원** 위원장님,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나 그런 어떤 것까지 걱정하실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 박세환 위원입니다.

저는 하여튼 전체적인 면에서는 이상민 의원님 말씀처럼 잘못된 입법에 기한 어떤 행정작용에 기해서 국민이 손해를 봤다면 당연히 원상복구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더군다나 입법을 통해서 정당화되었던 행정작용이 결국에 가서는 기초가 되었던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아서 과연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지금 헌법재판소 47조에 형벌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을 뒀다면 이런 어떤 금전적인 급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의 전체적인 취지가 아닐까요?

○**이상민 의원** 그런데 존경하는 박세환 위원님, 제가 아까 임종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헌법재판소 47조 규정이나 또는 소급효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경우를 한번 나눠 보면 소급효를 지금과 같이 인정을 안 한다, 그것이 관철되려면 어느 경우나, 위헌결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느 경우나 돌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돌려주고 어떤 경우는 돌려주지 않았는데 그 차이는 결국은 90일이라는 기간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달리 되는 것이고요. 또 만약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다 돌려 줘야 됩니다, 그것을 관철하려면. 돌려 줘야 됴에도 불구하고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돌려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는 소급효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없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박세환 위원 이상민 의원님, 이 법이 문제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민 의원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렇다면 1조 “목적”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석은 안 되지 않겠어요? 사유가 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결정이 되어서, 또 헌법재판소 47조와의 관계가 거기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민 의원 제 법률안의 원안에 박세환 위원님 말씀따라 그런 취지가 들어갔는데 교육위에서 심의하면서 아마 그 법률 제명도 좀 바뀌고 내용도 조금 달리 바뀌었습니다.

○박세환 위원 글썽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면에서 좀 명백하게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는데,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서 부과처분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부과처분이 어떻게 무효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민 의원 위헌결정을 받아서, 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박세환 위원 그런 취지가 이 법문상에 명백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워낙 이상민 의원님이 한 1조의 규정이……

○이상민 의원 그래서 제 뜻은 그 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등등등 했더니 그렇게 하는 것보

다는 교육부에서는 부과처분한 행정기관에서 취소를 먼저 하고……

○박세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 전체적인 법의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향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 47조를 국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향후 소급효 문제가 일어나서 헌법재판소에서 주저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해서 47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이 법에다 명시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민 의원 박세환 위원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박세환 위원 이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여하튼 소급효는 형벌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현실적으로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읽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특례를 정하는 것이 라면 그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 법조문에 명확하게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상민 의원 박세환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된 건은 헌법재판소법 47조나 소급효 적용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이 단지 제척기간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 절차적 규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구제받지 못한다는 그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박세환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잠깐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결정이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아마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하신 것일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아마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것입니다.

흠이 중대해서 이것은 위헌결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상태로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환급하도록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리실 것입니다.

○박세환 위원 이상민 의원님 말씀은 그 취지를 알겠는데 여기에 잘못된 일조를 한 것은 국회 아

니겠어요?

○**이상민 의원** 국회가 당연히 했지요.

○**박세환 위원** 국회가 잘못된 것이지요, 입법을 잘못된 것이니까.

○**이상민 의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사실 책임을 묻고 싶은데……

○**박세환 위원**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는 잘못된 입법을 믿고서 했으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상민 의원** 그렇다고 국회의원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여기서 핵심은 책임 추궁은 차후라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의 추궁은 따로 논의할 문제이고 지금 위헌결정을 받아서 일부는 돌려받았는데 일부는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자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500억, 1000억, 미집행액이 1500억이나 이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그대로 교육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약 4000억은 소요예산인데 이것은 충분히……

○**박세환 위원** 이상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그 열정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는데 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47조와의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상민 의원** 그것은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건방지게 제가 말씀드리면 47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로 저기 하시는 것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법 47조 검토를 좀더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47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박세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 위원** 선병렬 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을 헌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이 아닙니다. 그냥 헌법재판소법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원칙에 의해서 학교용지분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민 의원** 그렇습니다.

○**선병렬 위원** 우리가 법사위 소위 같은 데서 많은 논의를 하지만 예를 들어 독점규제에 관한 법,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많은 특별법에서 피해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이 아닙니

다. 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자가 들어가니까 헌법으로 생각하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한 경우에 국한해서 소급 환급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또다시 규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부총리께 묻겠는데요. 특별히 학교용지분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과거에 다른 택지초과소유분담금에 대한 환급,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것들이 위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그때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국민의 대표들이 다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런데 왜 이번에 특별히 학교용지분담금 환급에 관해서만 특별법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경우에는 그런 특별법안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과거에도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용지분담금에 관해서만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에 교육위에서 통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아무래도 그동안 법적 문제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의원님들이 새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병렬 위원** 국회의원들이 뜬금없이 왜 그렇게 새로 해석해요? 그 배경을 생각해야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위헌결정의 위헌결정문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의무교육의 무상성 또 평등의 원칙 이런 것이 다른 분야에서 보다 교육에 관련 되어서는 특별히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학교용지분담금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왜 동구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을 걷어서 서구에 쓰느냐? 그리고 일반주택에 사는 당신은 학교용지분담금을 안 냈는데 왜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걷어서 낸 학교용지분담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에 왜 다니느냐, 이렇게 교육과 관련되어서 예민합니다.

다른 택지초과소유분담금 같은 것, 과거에 그런 것은 저항이 있더라도 국가의 의무사항을 특정인에게 불평등하게 부과해서 실현했다고 하는 그런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전에 이의신청 안 했으면 당신은 환급받을 수 없다 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분담금은 국가의 고유한 의무를 저

버리고 국민의 특별한, 특정인의 분담금에 의해서 재정을 충당했다 하는 불만 때문에 일선에 가서 보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헌법재판소법에 당신들 90일 전에 이의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게 엄중한 국가의 법이니까 죽어도 못 고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급하는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향후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대로 해 주고 다른 여러 가지 위헌 결정에 의해서 그간 정부가 징수한 조세나 분담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 소급해서 특별법이 생겨날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무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국가가 충실히 안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에 나온 47조의 규정을 준수해서 국민들에게, 분담금을 낸 분들에게 어필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법일 뿐이다.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난 여러 가지 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조세에 대해서 특별법안이 만들어질 때 그때는 그 사안에 따라서 특별법을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는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런 것이 왕왕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이에요. 설령 특별히 필요하면 향후에도 헌법재판소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얼마든지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법의 교훈적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일시적으로 그 사회의 조류나 국가재정의 특수한 필요에 의해서 분담금을 받고, 합리적이지 않은 조세를 받고 그랬을 때 나중에 위헌결정이 나면 지금과 같은 특별법이 또 생겨나서 사전에 징수한 모든 것이 다시 환급될 수 있다는 교훈을 정부에서 동시에 가져야 된다.

그래서 향후 우리 정책에 있어서 조세의 형평성이나 일반성 이런 것이 잘 준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너무 모든 위헌 결정난 것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특별법에 의해서 환급 조치될 것이다 이것은 기우이다.

다만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환급에 관한 것은

이게 당연히 정부에서 일반 세금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것에 의해서 필요하면 별도의 일반적인 세금, 세금을 별도로 걷어서 학교용지를 시급히 매수해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앞으로 향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선병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의무교육, 또 무상교육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의무교육을 죽 해 오면서도 초등학교까지도 90년대 초까지 수업료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무슨 후원회비, 육성회비라는 이름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지금 의무제로 되어 있지만 중학교 단계의,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선병렬 위원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학부모들이 낸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동창회에서 낸다거나 그 학교가 특별히 좋아서 발전기금을 낸다든가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요자라든가 공급자들이 직접 그 공동체의 협의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없고 다만 교육재정 수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을 현실적인 테두리를 확 벗어나서 오히려 교육부총리께서 획기적으로 교육재정에 관한 부족함에 대한 호소를 국민들에게 하셔서 그것도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향후 하시면 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여하튼 그동안은 법체계와 등 때문에 겨우 중학교 무상, 말하자면 수업료를 받지 않은 것이 2002년에 와서야 겨우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학부모와 주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부담해 온 현실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처럼 완전히 모든 것을 국가가 해 왔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는 것을, 그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 위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누구를 처벌하자든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차후 개선할 의지를 어떤 방향에서 세울 것인가를 촉구드리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 정도 했으면 대강 의사표시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대체토론이니까,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舜衡 委員 특별법 발의하신 이상민 의원의 취지나 열의에 대해서는 존경을 하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게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30여 만의 국민들이 안 내도 될, 현재의 위헌 결정에 의해서 안 내어도 될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저도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특별법 제정은 신중해야 된다는 것 한 가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이 비록 헌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재의 모든 결정이 헌정 질서나 국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47조2항에서 재산권에 관해서 소급효를 부인하고 장래효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상민 의원은 10여 년 전에 끝나서 이것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러시지만 이게 또 분명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우리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소급입법에 의해서 환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99년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헌결정이 났는데 미환급 된 게 1조 1371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에 국민들로부터 특별법 제정청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건교위에서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를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다음에 토지초과이득세, 이것이 94년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또 미환급이 7465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을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민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趙舜衡 委員 충분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아까 하신 것으로 충분하고 안 하셔도 좋고……

○이상민 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부분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냥 제 의견하고 견해만……

○이상민 의원 의견이 아니라 사실에 있어서 전

제를 좀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 교육부와 정부당국의 논리에 의해서……

○趙舜衡 委員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이상민 의원 혼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비소급효 규정과 지금 이 사건의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趙舜衡 委員 관련이 있지요.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委員長 安商守 이상민 의원님은 관련 없다는 주장이고 다른 분들은 있다는 주장이니까……

○趙舜衡 委員 솔직히 말씀드려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한 소급효 인정된다……

○이상민 의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趙舜衡 委員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고 그것을 하십시오.

○이상민 의원 아니, 그것을 바꾼다 한들……

○趙舜衡 委員 그것을 해야지!

○이상민 의원 조순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 그 법을 소급효로 바꾼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여전히 생기는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趙舜衡 委員 그러니까 90일 신청기간을 뺐다는 것은 교육부에서 위헌결정 난 다음에 그런 것입니까? 위헌결정 난 후에 한 거예요?

○이상민 의원 아닙니다. 그전입니다.

○趙舜衡 委員 그전이에요?

○이상민 의원 예.

○趙舜衡 委員 위헌결정도 안 났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해요?

○이상민 의원 행정권 우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趙舜衡 委員 위헌결정 난 다음에 시행한 거예요?

○이상민 의원 그전부터 있던 겁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전에 감사원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趙舜衡 委員 법에 의해서 정수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환급이 됩니까?

○委員長 安商守 잘 아시는 분, 차관이 답변하세요. 장관이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감사원법에 부과가 잘못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 내에서 이 의신청을 적법한 기간 내에 했을 경우에는……

○趙舜衡 委員 현재 결정난 후에?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아닙니다.

○이상민 의원 그전에……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이 건하고는 관계 없이 전부터 존속됐던 제도입니다.

○趙舜衡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예,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런데 그것은 부담금 자체가 잘못돼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부담을 부과받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90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에 되어 있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것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특별법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든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결론이 날 수도 없고 소위에서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어요.

○委員長 安商守 오늘은 대체토론이니까 이 정도 하고요. 오늘 법안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으니 이렇게 합시다.

○임종인 위원 위원장님, 엄청나게 밀려 있지만 이 법안은 매우 중요한 법안이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민 의원 위원장님, 제안자도 발언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정부당국한테 설명드릴 기회가……

○委員長 安商守 이때까지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상민 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지금 제일 많이 하셨어요.

○이상민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셔야지 왜 정부당국한테 묻습니까?

○임종인 위원 매우 중요한 법안이니까 제가 한마디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법사위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이상민 의원님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이상민 의원 예.

○委員長 安商守 그다음에 임종인 위원님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임종인 위원 예.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임종인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임종인 위원 이상민 의원님이 참으로 좋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제 얘기를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어요. 헌법재판소법도 법률이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법도 법률이고, 법률 간에는 어떤 법이 우선하느냐, 특별법이 우선한다……

그다음에 저는 학교용지 환급금하고 택지초과소유, 토초세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2개의 법안, 택지하고 토초세는 완전히 극상류층을 보호해 주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결이고 이 학교용지 환급금을 반환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일반인들, 일반 서민을 보호하는 매우 잘된 판결입니다. 그래서 택지초과소유, 토초세 이런 청원을 국회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 받아들였으면 또다시 엄청나게 국회가 욕을 먹었겠지요. 부자를 국회까지 옹호하는구나…… 헌법재판소는 일부 그럴 수 있어도 국회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을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에 돌려서 무엇을 논의할 것입니까? 이 법을 소위로 넘기는 것이야말로 국회법 위반인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안을 우리가 왜 소위로 넘깁니까? 오늘 투표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적당하게 그만하세요.

이상민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민 의원 제가 가능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이상민 의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자이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安商守 답변이 충분하게 됐어요.

○이상민 의원 위원장님, 말하는 사람이 충분히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됐다고 판단하시면……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 하겠어요?

○**이상민 의원** 저는 하겠습니다. 결론 내려 주세요.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다른 회의를 못 하니까 위원장의 의사진행에도 협조를 해 주세요.

○**이상민 의원**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말을 빨리 하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민 의원** 저는 오늘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아십니다. 위원님들,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나누실 때 다 말씀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태도 변경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계가, 교육부총리를 비롯해서 교육당국이 전국의 교육감과 교육장들을 다 동원해서 지역구 의원들 막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결정에 교육당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을 좀 하시고요.

돌려줘야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돌려줄 형편이 되느냐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돌려줘야 되지만, 돌려 주는 게 마땅하지만 돈이 없다, 이것은 도둑놈입니다. 저는 교육당국이 그동안 법 집행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병렬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A지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거두었다면 그 지역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런데 실태가 B에 쓰고 C에 쓰고 다른 데 쓰고 교육당국의 복지 용도로 쓰고, 엉망진창입니다. 위원님들, 한번 다 조사해 보십시오. 교육재정이 얼마나 방만하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 사건의 쟁점은 법을 믿고 정책을 믿고 그냥 고지서 날아오면 세금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코 이의신청,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면 되는구나’, 그 사람들은 구제를 못 받습니다. 반면 ‘이것 못 믿겠다’ ‘위헌 나겠지’ 해 가지고 아등바등 달려든 사람들은 구제받았습니다. 이로부터 구제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26만 가구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날아오는 고지서는 이제 무조건 이의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생기는 사회갈등 비용이나 저항 비용은 어떻겠습니까? 고려 좀 해주시고요.

다음, 교육당국은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교육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같은 부자 지방자치단체에 받을 돈이 등등 합해서 1조 4000억 원이 있습니다. 그것 채우, 외상대금 받으면 됩니다. 집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법적 안정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그 구성원들이 그 법을 믿고 동의감이 들어야, 그것을 전제로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못 믿겠다고, 따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법적 안정성이 되겠습니까?

네 번째, 개인 사이에도 남의 돈을 잘못 가져가면 돌려줘야 됩니다. 안 돌려주면 도둑놈입니다. 하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가져간 것, 헌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법률에 근거해서 돈을 거둬 갔는데 안 주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논의의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당연히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육성해야 될 것은 국가 정책이고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책무고 묶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금 걷고 있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교육세까지 걷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부총리를 비롯해서 차관, 관계자 여러분들이 교육감이나 교육장들 동원해서 이 법을 어떻게든지 막아 달라고 로비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 나올 때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공약을 했어요. 대통령한테 진언하세요. 26만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이 법을 우리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막으로 한번 결단을 내려서 박수 한번 받으시더라고 진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다 됐습니다. 양쪽 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지금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이러면 또 왔다갔다 끝이 없는 데……

○**이상민 의원** 저도 반박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반박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委員長 安商守** 됐습니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강길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정부가 제출한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민 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임종인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투표를 해야 됩니다. 어떤 위원이 소위에 넘겨야 된다는 것이 불분명해요. 어떤 분이 넘기자고 하는지를 이야기하세요.

○이상민 위원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지금까지 이의가 있으면 다 소위에 넘겨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임종인 위원 넘길 이유도 없는데, 넘기자고 하는 분이 없는데 왜 이것을 넘깁니까?

○**委員長 安商守** 지금까지 한 사람만 반대해도 다 넘겨 왔잖아요.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표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 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임종인 위원 약간의 문제점을 발언했었지 소위에 넘기자고 조순형 위원님도 안 하셨고 박세환 위원님도 안 하셨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지금까지 우리 법사위원회 관례가 그래 왔잖아요.

○이상민 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委員長 安商守** 그것은 지금까지의 관례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委員長 安商守** 저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것인데……

○이상민 위원 더 이상 논의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소위 회부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임종인 위원 이게 소위가 되면 괜히 늘어가지고 쓸데없이 권리구제가 늦춰집니다.

○주성영 위원 말씀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임종인 위원 그 외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주성영 위원이 소위 회부를 제안하십니까?

○주성영 위원 예, 제가 소위 회부를 제안합니다.

○임종인 위원 왜 제안하니까? 이유를 말하세요.

○**委員長 安商守** 조그만 것도 전부 소위를 했는데 이렇게 대립되고 정부가 반대하는 것을 소위에 넘겨서 좀 심도 있게 해 보자는데 그것을 반대하십니까?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표결하시지요.

○박세환 위원 그러면 표결하지요.

○**委員長 安商守**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그 방향도 맞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일선 시·도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 부담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이것을 환급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환급은 하되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 문제점들은 해소하고 환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늘 표결이라든가 당장 처리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일단 소위에 넘기되, 다만 당사자들이 국회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소위에 넘겨서 소위의 처리시한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중까지 소위에서 충분히 결론을 내려 가지고 4월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지금까지의 관례가 소위에 넘기는 것인데, 조그만 법안들도 한 사람만 반대해도 다 넘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례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더군다나 오늘 닳새가 안 됐는데도 제가 이렇게 상정을 시켜 줬지 않습니까? 나흘인데도…… 그냥 넘어갔으면 4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 줬는데 너무 자기 고집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오늘 5일이 안 된 법안입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희 위원** 제가……

○**委員長 安商守** 이용희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용희 위원** 교육부총리, 오늘 보니까 내가 존경심에 변화가 오네요. 조금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정리가 됐어야지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통과된 거예요? 만장일치로 된 거예요, 여야 합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경위를 한번 얘기해 봐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법률가 위원들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용희 위원** 법률가 아닌 분들은 찬성을 한 것이고……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희 위원** 자,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상민 위원님, 이것 봐요! 여봐요, 얘기 좀 들어봐.

○**이상민 위원** 공식석상에서 “여봐요”가 됩니까?

○**이용희 위원** 아니, 얘기 좀 들어보시라니까 그래.

○**이상민 위원** 얘기 듣습니다.

○**이용희 위원** 왜 그렇게 흥분해 가지고 그래요?

○**이상민 위원** 아니, 공식석상에서 “여봐요”가 됩니까?

○**이용희 위원** “여봐요” 한 것이 지금 잘못된 게 있어?

○**이상민 위원** 잘못된 거지요!

○**이용희 위원** 싸움하려고 하는 거!

○**이상민 위원** 뭐라고요?

○**이용희 위원** 싸움하려고 해?

○**이상민 위원** 지금 누가 싸움하는 겁니까?

○**이용희 위원** 젊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상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봐요” 하

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희 위원** 그러면 뭐라고 그래. ‘각하’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마지 못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 아무리 이상민 위원이 옳은 얘기 하지만 지금 표결하면 통과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원활동이라는 것이 나 개인의 마음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 봐가면서…… 이제껏 애써 놓고 여기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위원장 말씀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미뤄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의논해 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의의가 없으면 모르지만 교육부총리가 저렇게 못 하겠다고 야단해 썼는데, 꼭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저분들도 자기들 소신껏 활동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표결해 봤자 뻔한 것 아니에요. 내가 봐도…… 발의자인 이상민 의원을 생각해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뭘 그것 가지고 “여봐요” 한다고 해서 시비 걸고 “저봐요” 한다고 해서 시비 걸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일단 이것은 소위원회로 회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소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고……

○**임종인 위원** 위원장님, 소위에 회부하되 처리 시한을 정하지요?

○**委員長 安商守** 소위에 시한을 한정하는 것도 무리이고……

○**주성영 위원** 지금 여기서 내부적으로 찬성, 반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다 알잖아요.

○**委員長 安商守**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괜히 투표해 봤자 결론이 뻔한데……

6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65. 행정조사기본법안(정부 제출)

6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17분)

○**委員長 安商守**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6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65항 정부가 제출한 행정조사기본법안, 의사일정 제66항 정부가 제출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정부가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정부가 제출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64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제65항~제69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제2차관 장인태**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행정조사기본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행정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각종 행정조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개별 법령에 규정된 행정조사의 요건 및 절차규정이 미흡하고 조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행정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본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권 남용 금지, 중복조사 제한 등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출석·보고·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 목적, 조사 범위 등을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여러 행정기관이 중복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 대상자가 조사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기관이 사전에 통지한 조사 사항에 대해 연기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조사 대상자가 조사 내용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성실한 자율신고자에게는 행정조사를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 보호와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에 대한 가점 비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고 국가유공자 등 가점자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고자 과목별 4할 미만 득점자에 대하여는 가점 수혜를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4개 법률안은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 보호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본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85개 법안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34건은 사실 한글화 작업입니다. 그것을 빼더라

도 지금 50건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속력을 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에 있어서도 요점만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0개 법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쪽입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의 예외규정과 관련하여 안 제8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목을 보면 자회사뿐만 아니라 지주회사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자회사의 경우에는”이라고 규정하여 법문의 해석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2페이지, 또한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제1호 단서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어 단서 중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출자총액의 제한 규정 조문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조문 정리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정한 기업집단에 대한 출총제기업집단 제외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재무구조·계열회사의 수 및 소유지배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출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이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필요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 대상 제외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고 출총제 적용 제외 기준의 취지를 감안할 때 필요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외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지주회사 요건 충족 유예기간 연장 관련 벌칙 등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지주회사 전환 시 인정되는 유예기간 2년에 대하여 경제여건의 변화·주식처분금지계약 등으로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처분이 곤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규정 안 제8조의2제5항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이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그러나 개정 규정은 지주회사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승인을 조건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의무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을 연장받지 못하면 결국 같은 조 제2항~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벌칙 등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개정안의 벌칙조항은 현행대로 제8조의2제2항~제4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사기본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제1항 전단은 사전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후단에서는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통지가 생략되는 추가조사의 범위가 범문상으로 명확하지 않아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조사의 범위를 사전 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 밖의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률안 4건에 대한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법률안들의 부칙 안 제2항은 이 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이 연초에 공고되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가 2007년 6월 30일

까지 현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인 점을 감안해 불 때 유인물에 주서한 바와 같이 시험 시행일자 기준으로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인 위원님, 다음에 박세환 위원님.

○**임종인 위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출총제 적용 대상이 자산 규모 6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높아지고 출자 한도는 25%에서 40%로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적용대상 기업이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6개 그룹 22개 기업으로 줄어든다는데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 예, 그렇습니다.

○**임종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재벌 규제를 완화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 하도 이 문제는 논의가 많아서 다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총제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통한 여러 가지 폐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는데 그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또 지금 와서는 그것이 투자에 제한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어서 가능하면 순환출자 규제로 인한 폐해를 막되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대안을 마련하다가 꼭 필요한 중핵기업에만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아예 이 출총제에서 자유롭게 해 주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임종인 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11월에 출총제 기업집단 출자 현황 분석을 통해서 출총제 문제가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 투자와 출자의 제한 문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의 이때까지 검토보고입니다마는 심리적인 제한은 있다 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임종인 위원** 지금 순환출자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 예, 그렇습니다.

○**임종인 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순환출자 규제를 통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표를 받아서 한 이른바 참여정부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재벌들에 대해서 편의를 주고 이익을 주는 정책을 수행하는지, 특히 공정거래위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열심히 그러한 것을 막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참 제대로 되지 않고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피해가 많고 투자와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출총제는 완화해 주고 기업 지주회사의 요건을 완화해 주고 이러한 것은 매우 경제계의 후퇴이고 헌법 제119조에서 말하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이러한 헌법 조항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법사위에서 깊이 토론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위에 회부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임종인 위원** 아까 아파트 문제하고 비슷해서……

○**委員長 安商守** 그것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러면 그렇게 논의를 할까요?

○**임종인 위원** 위원회에서 열심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委員長 安商守** 박세환 위원님!

○**박세환 위원** 행정조사기본법안에 대해서 좀 여쭙 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니까 현재 각 개별법적으로 행정조사에 대한 어떤 규정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어떤 기본법안으로 좀 담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각종 행정조사가 수사조사라든지 중복조사, 그리고 임의조사 등 좀 편의주의적으로 되어서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또 기업의 부담을 가져왔던 것을 절차를 마련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박세환 위원 하여튼 제가 법안 내용을 일일이 다 본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냥 몇 조문 보면서 느끼는 것은 “‘행정조사’라 함은”, 제2조의 정의를 보면, 거기에서만 추론을 해서 보면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대상자에게 출석·진술 요구를 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읽어집니다,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 임상규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행정조사의 경우도 적절한 절차를 밟도록 하자는 것이 이 취지입니다.

○박세환 위원 글썄 하여튼 이 내용 보면…… 이 법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장 임상규 기본적으로 법 제정의 취지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문안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박세환 위원 전체적인 취지는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행정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되고 또 국민이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조사대상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임상규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보면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기본법안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국무조정실장 임상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되, 행정조사라는 용어의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2조는……

○박세환 위원 아니, 봅시다. 조사 대상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정책결정을 함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대상자에게 출석·진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정책 결정을 하는 데도 필요하다면 그냥 아무나 불러 가지고 조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하여튼 조사 대상자가 되면?

○국무조정실장 임상규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조사 대상이 되면……

○박세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안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이라든지 이것은 사실상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만들어 놓아서 남용의 어떤 가능성을 배제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말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출석 요구도 할 수 있고……

○국무조정실장 임상규 아닙니다. 이 법의 취지가……

○박세환 위원 아니 글썄,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출석 요구할 수 있고 현장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고 또 정책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들어가서 시료도 채취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형사적인 그런 것하고는 어떤 금을 그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장 임상규 기본적으로 행정조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령에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박세환 위원 아니 글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남용의 어떤 가능성도 없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생각이 들고요. 왜 법령의 근거만 얘기합니까? 집행 과정에서 남용 가능성이 있는 법률이라면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장 임상규 남용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규정을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기본적인 전제로 ‘피조사 대상자가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조사활동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라는 명시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장 임상규 연기라든지 기피신청, 또 서면요구서 사전 발급 이런……

○박세환 위원 아니,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국무조정실장 임상규 법률에 근거가 있는데 거부하는 못 하지만 적법절차를 밟도록 하고……

○박세환 위원 아니, 출석 요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거부할 수 없는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임상규 거부는……

○박세환 위원 그러니까 기본법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아주 최소한도의 상황만 딱 규정해 놓고

개별법에 따라서 출석 요구도 필요하면 좀 할 수 있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죽 권한을 다 나열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임상규** 이 법은 제정 과정에서 국회 규제개혁특위에서 제정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절차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 가지고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박세환 위원** 그런데 그런 법인데 저는 이것을 소위에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이것이 제정법이니까 소위에 넘겨서 열심히 한번 더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정법안은 원래 또 금방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임상규** 죄송합니다마는 그동안 이것이 국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시행을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부담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委員長 安商守** 4월에 통과해도 관계없잖아요? 4월 임시국회에는 통과될 겁니다. 한 달인데 뭘 그래요? 제정법이니까 좀더 심도 있게 보자 이 얘기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성영 위원** 소위원회에 회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까 일부 소위로 넘기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기업체, 또 정부에서 신속하게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꼭 소위에 넘길 필요 있겠습니까?

○**김동철 위원** 소위에 넘겨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의견 조정이 덜 끝났습니다. 당 내 의견 조율이 덜 끝났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래요? 그러면…… 정부에서 오히려 이것 빨리 해 달라는데……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 기업이나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좀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과 하나 질의를 좀 해도 될까요?

○**委員長 安商守** 예.

○**나경원 위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꼭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 지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정부제출안으로는 지금 정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의원입법안을 기초로 해서 위원회안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조항들만 정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저희들은 빨리 법이 통과되어야 4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른 어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도 하고 거기에 따른 법 집행이 되니까 가능하면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정부위원회에서는 소위에서 여야 전원 합의를 했고 또 정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법사위원회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이 원래 해마다 4월 1일에 해 왔었던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 예.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3월에 통과가 안 되면 사실상 4월 1일에 기존 법에 따라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법의 효력이 사실상 1년이 연장된다는 이런 취지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 1년이 아니라도 하여튼 법이 시행될 때까지 연기가 되는…… 그리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기업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하니깐 가능하면 좀 빨리 통과시켜 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정부에서 요청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당이 언제 야당이 돼 버렸다.

○**선병렬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이 법 통과되고 나서 우리 열린우리당이 의총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후에 법사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방침을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2소위가 있지요? 2소위가 어차피 이번 임시

국회 전에 소위가 열려서 필요하다면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수 있으니까 한번 소위에 줘…… 두 사람 이상이 소위에 통과시켜 달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본회의에 의결할 수 있는데 이 법만큼은 소위로 회부해 주시면……

○**委員長 安商守** 꼭 소위로 넘겨야 되겠습니까?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으면 안 되겠어요?

○**이상민 위원** 소위에 넘기시지요.

○**委員長 安商守**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았다가 거기에서 당론이 결정되면……

○**이상민 위원** 그래도 소위에 넘겨 주세요.

○**委員長 安商守** 이상하다, 요새는 거꾸로 된 것 같다, 여당은…… 이제 여당 아닙니까? 우리는 정부안을 빨리 해 주려고 지금 넣었는데……

○**박세환 위원**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읍시다.

○**이상민 위원** 아까 그 관례에 따라서……

○**委員長 安商守** 알겠습니다. 나도 억지로 뭐……

○**이상민 위원** 바로 직전에 한 사람이라도 의의를 결면 소위로 넘긴다는……

○**委員長 安商守** 그래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득이 안 되면 그냥 넘겨야지요.

○**국무조정실장 임상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 주로 혜택을 봅니다.

○**선병렬 위원** 그 법이 아니고……

○**국무조정실장 임상규** 아니, 그것도 계류하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준비기간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데 또 한 3개월 걸립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요, 또 행정조사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3개월 걸리고 해서 4월보다는 2월에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박세환 위원** 이것은 집행의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장 임상규** 오히려 남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65항 정부가 제출한 행정

조사기본법안, 이 두가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세요, 이의 있어도 다 이의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무 자기 주장만 하지 말라고 앞으로.

의사일정 제66항 정부가 제출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정부가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정부제출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돼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의장님, 오늘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표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의결정족수가 오늘은 넘치고 이래서 위원장도 회의 진행하는 데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사실은 건수로는 83건을 처리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김태년·이해봉·정성호·김동철·유승희·우제창·박명광·서재관·홍창선 의원 발의)(계속)

7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정병국·이혜훈·한선교·정진섭·안홍준·정종복·최구식·안상수·최병국·김용갑·박승환·이군현·서상기·이종구·김충환·신상진·정희수·임인배·주호영·박찬숙·이계진·김기춘·주성영·김재경·김정권 의원 발의)(계속)

7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6. 法律救助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재경·엄호성·강창

일·신학용·안상수·박상돈·심재덕·이시중·고조홍·이원영·조성래·정성호·김태년·선병렬·우제창·문석호·박기춘 의원 발의)(계속)

77. 法律救助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8. 法律救助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9. 한국법학원 육성법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최재천·주성영·주호영·김재경·천정배·양승조·우윤근·장윤석·정성호·선병렬·최용규 의원 발의)(계속)

8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박세환·나경원·최병국·임종인·선병렬·김동철·이상경·주성영·조순형·이종걸·이상민·안상수·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8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김성조·심재철·김재경·엄호성·유승민·김재원·임해규·김기현·이인기·고조홍·안상수·신국환·김태년·황우여·강기정·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82.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강창일·양승조·민병두·엄호성·이은영·우윤근·김태년·김현미·이영호·장영달·서재관·김정권·홍재형·최성·장복심·박상돈·이근식·강기정·박찬숙·주승용·정성호·이해봉·이상열·최용규·장경수 의원 발의)(계속)

83.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84. 이자제한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이용희·임종인·선병렬·주성영·최병국·문병호·이상경·이화영·이상민·노영민·오영식·김낙순·김재윤·김선미·우원식·최규성·우윤근·이영호·김동철·양승조·변재일 의원 발의)(계속)

85. 이자제한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최순영·천영세·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계속)

86. 이자제한법안(대안)

(17시45분)

○委員長 安商守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을 추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6항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7항 정부가 제출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8항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9항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법학원 육성법안, 의사일정 제80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1항 김성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2항 선병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3항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4항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85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안, 의사일정 제86항 이자제한법안(대안),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85건의 법안을 다루네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인 김동철 위원께서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동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동철 위원입니다.

먼저 오제세 의원 및 장윤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호사의 과세자료를 투명화하고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에 대한 청탁·알선 행위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변호사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할 때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기재사항 중 수임한 사건의 내용 및 수임액 등 주요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수임 건수 및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자료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둘째,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의 범위에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알선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의 공무원 의제조항만으로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변호사법의 취지와는 다른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큰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무 등에 대한 청탁·알선과 관련하여 이들을 명확하게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또다시 법문의 해석에 의하여 이른바 청탁·알선 브로커들이 처벌을 면하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법학원 육성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법조 실무가와 법학교수 등을 모두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포괄적 법률가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지원·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국내 법무역량의 집결과 연구활동, 대외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기본적 원안을 유지하되 한국법학원의 기능을 고려하여 한국법학원에 대한 지원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고 회원·소속기관 등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법학원의 회원이 소속된 기관 등의 한국법학원에 대한 평가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며 한국법학원의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한 내용은 한국법학원이 정관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아 삭제하고 한국법학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시행일을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설학원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유예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와 양승조 의원이 각각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 요건을 현행법은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법률구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 요건은 기준, 자산, 종사자 등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입니다.

둘째,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구조대상자의 증명을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의 범위, 자료제공 요청의 사유 및 자료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넷째, 법률구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 법률구조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에 한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직접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당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법률구조법인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법률구조사건에 대하여는 지시·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대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창원지방법원의 인구수 및 사건 수 등 증가에 따라 사법서비스를 제고하고 창원지방법원 본원 사건의 적정한 분산을 위하여 마산시·함안군 및 의령군을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을 신설하기로 하였는바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법원청사 신축 예산 확보 및 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시

행 시기를 2011년 3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병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김성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하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고,

둘째, 공탁금관리위원회를 법원행정처의 산하가 아닌 별개 법인으로 설립하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셋째, 출연금 등의 용도에 법률구조사업 지원을 추가하고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탁금관리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탁금관리위원회를 비법인으로 하고 출연금을 국고 귀속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등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공탁금관리위원회를 비법인화하는 경우에는 운용 수익금을 공익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출연금의 결산에 대한 국회 보고 등 입법적 통제로써 적정한 운영을 감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본 대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에 관한 법률안과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하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리대의 폐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둘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있어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되 최고이자율은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 4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셋째, 계약으로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정한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미 초과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도록 하였고,

넷째, 간주이자 규정을 두어 채권자가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 등을 징수하여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면탈하고자 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일반 사인들 사이의 거래뿐만 아니라 음성적(미등록) 사채업에도 적용하되 제도권 금융과 등록 대부업자는 적용에서 제외하여 자금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대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환 위원** 공탁법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반대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반대토론은 조금 이따 하고요.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이자율을 40%로 정했지요? 40%로 정했는데 재경부에서는 50~60%로 해 달라고, 잘못하면 서민금융이 오히려 더 위축되고 음성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50~60%로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정부 측에서는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좀 했나요?

○**소위원장 이상민** 예, 검토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대법원하고 법무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성호** 법무부에서는 40%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도권 대출금리가 4~19%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이 연 66%입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의 입법례가 대부분 연 3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등록 대부업자를 대부업에 등록시켜서 제도권화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보다는 낮아야 된다, 그래서 40%나 50%나 그것은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

지만 저희들은 40%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40%, 50%는 소위에서 많이 의논이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또 대법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차한성**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박세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박세환 위원** 차장님,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하는 권한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니까? 실무적으로 전 금융기관한테 이것을 개방하면 안 되나요?

○**법원행정처차장 차한성** 공탁금 운용은 전국적으로 체계화를 시켜서 일괄 집행할 필요성이 큼니다. 법원별로……

○**박세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금전공탁인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공탁금 보관은행을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권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 처리 같은 것이 눈부신 발전을 했고 또 IT 관련 기술도 눈부신 발전을 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전 금융기관한테 이것을 충분히 다 개방할 수 있는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 권한을 끌어안고 계세요?

○**법원행정처차장 차한성** 지금 박세환 위원님께서 말씀……

○**박세환 위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 향후 이런 대법원장의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하는 권한은 이제 폐지해야 될 때가 왔다는 그런 결의안까지도 다 통과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회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차한성** 납입된 공탁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차피 금융기관이 소수 금융기관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탁금을 납입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박 위원님의 지적도 참고로 해서 작년 10월부터 일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운영하듯이 납입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아무 은행이나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납입된 돈을 관리하는 은행은 여러 은행, 여러 금융기관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박세환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공탁금관리위원회라는 것을 산하가 아닌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한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떳떳하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그냥 국민에 대한 면피용 아닙니까, 공탁금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두는 것도? 그래 가지고 대법원장의 지정 과정에서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있는 것 마냥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차장 차한성** 지금 현재도 신한은행 등에서 이 공탁금을 운용해서 생기는 수익을 법률구조공단의 활동비 등으로 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출연행위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 금융기관이 운용해서 생기는 수익을 국민들한테 되돌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봅니다.

○**박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탁금에 따른 어떤 수익금은 당연히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차한성** 그런데 국고에 귀속시키는……

○**박세환 위원** 이것을 왜 공탁금관리위원회에다가 출연하는 식으로, 형식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공탁금에 따른 수익금은 지정 은행 소유가 되는 건가요? 소유가 누가 되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차한성** 이것이 국고로 가 버리면 저희들이 지금 이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에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 배정을 그러한 목적으로 다시 배정을 받아야 되겠지요.

○**박세환 위원**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중인 공탁금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 우리 은행계의 여러 가지 여망이라든지 또는 이런 IT 관련 기술이라든지 또 국민의 편의 입장

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너무나 미온적인 개정법률안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이 왜 자꾸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하는 권한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한테 이것을 돌려 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해 주셔서 정말 진정한 공탁법 개정법률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85건을 처리하는데 저녁은 제가 살 테니까 부의장님, 꼭 저녁은 드시고 가십시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인 위원** 소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자제한법인데요. 지금 적용 대상 범위가 일반 사인들 사이의 거래하고 미등록 사채에만 적용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도권 금융과 등록대부업자도 다 같이 적용을 해 줘서 40% 이하로 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군대를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위원장 이상민**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 거래를 필요로 하는 수요 계층이 따로 있는 거래의 실적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부업법에 따른 그러한 금전 차용의 거래를 원하는 수요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양성화하고 음성적으로 폭리를 더 취하는 것을 막고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양분해서 입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임종인 위원** 법무부장관님, 등록대부업자의 경우 66%, 그다음 사채업자가 평균 223%였다는데, 등록대부업은 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법도 개정해서 40%로 낮추는 게 앞으로의 개정 방향이 아닐까요?

○**법무부장관 김성호** 앞으로의 개정 방향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소위 금융업 또 등록대부업 이런 기관들은 지금 현재도 금융당국의 감독이 가능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이자율을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서는 적용을 배제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발의한 게 아니라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여하튼 다른 것은 지금 규율이 가

능하다, 그래서 아마 그 규율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만 취급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종인 위원** 저도 박세환 위원님의 표현 방법을 빌려서 법사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등록대부업 66%도 매우 높은 이율입니다. 이 법은 매우 적절하게 잘 고쳤지만 지금 40%와 66%에서 26%의 차이는 누가 지느냐, 결국 돈 없는, 담보가 제대로 없는 이러한 서민들의 경우에만 66%의 고율 이자를 내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시의적절하게 잘 고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까지도 포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商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선병렬 의원** 박세환 위원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간곡하게 호소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 중 상당 부분 박세환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지금 이 법이 개정됐을 때 실현될 여러 가지, 그나마 반영될 수 있는 투명성 또 법률구조사업의 재원 확대 이런 것이 전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 법에 다소 미약한 것이 있고, 또 이 법의 개정 취지가 우리 법조계나 금융계에 잘 반영되어서 조금 더 투명해지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모아졌을 때 다시 개정안을 내서, 또 그렇게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법을 처음에 발의할 때보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아 주셔서 가지고 상당히 더 균형 잡힌 법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저도 이 공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더 국민의 요구에 맞게 완벽하게 개정되고 또 활용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그간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입니다. 한 2년 됐을 겁니다.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주신 이 법만큼은 오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후에 법사위에서 더 논의해서 좋은 안으로 이 법이 점차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 하는 말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금 문제는 공탁법인데 공탁법에 대해서는 박세환 위원님의 반대의견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고 그냥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가야지, 이상민 위원은 앞으로 자기 것 너무 고집하지 말아요.

○**임종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자제한법에서 등록대부업자 문제인데요. 등록대부업의 경우에 법으로는 66%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금감원 조사에 의하면 104%가 평균입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104%의 이자율을 내는 이러한 것이고 고금리를 선도하고 있는데 등록대부업자를 빼는 것은 반절도 안 되는 성공이다, 그래서 등록대부업자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그것을 반대의견으로 그냥 속기록에 남기고 통과시킵시다.

○**임종인 위원**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소위원장 이상민**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종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는 것에는 다 공감을 하시는데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제한법에서 대부업과 관련해서 적용 범위를 거기까지 미치려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재경위 소관이거든요.

저희들이 권한쟁의 범위 내에서, 넘어서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심의할 수 없고 만약에 임종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상대로 관철되려면 대부업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부업법 개정안을 내서 가지고 재경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임종인 위원님의 의견은 저도 아까 50% 얘기를 했지만 다 반대의견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의견으로 정리하고요.

○**임종인 위원** 개혁성이 강한 이상민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믿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부족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5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8항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3항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6항 이자제한법안(대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9항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법학원 육성법안, 의사일정 제80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6항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7항 정부가 제출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1항 김성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2항 선병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4항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85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안,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법사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더군다나 85건의 법안이 처리되어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부의장님, 바쁘신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분 좋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무슨 울산대학교하고 각급 법원, 마산에 법원 설립하는데 이것 기분 굉장히…… 사실 이주영 위원하고 최병국 위원은 오늘 한턱내야 되는데 그냥 가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법 제 처 장	김 선 옥
국 가 보 훈 처 장	박 유 철
산업자원부무역투자정책 본부무역투자진흥관실 무역정책팀행정사무관	김 재 하
중앙인사위원장	권 오 룡
공정거래위원장	권 오 룡

○법원측 참석자

법 원 행 정 처			
처 장	장 윤 기		
차 장	차 한 성		
사 법 정 책 실 장	강 일 원		

○출석 위원(15인)

김 동 철	나 경 원	노 회 찬	문 병 호
박 세 환	선 병 렬	안 상 수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용 희	이 주 영	임 중 인
주 성 영	조 순 형	최 병 국	

○위원 아닌 출석 의원(3인)

양 승 조	장 복 심	장 향 숙
-------	-------	-------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임 인 규
전 문 위 원	박 기 준
전 문 위 원	임 중 호

○정부측 참석자

부 총 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 신 일
법 무 부 장 관	김 성 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김 명 곤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박 명 재
제 2 차 관	장 인 태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이 용 섭
차 관	이 춘 희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유 시 민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정책본부노인정책관	손 건 익
외 교 통 상 부 제 2 차 관	김 호 영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 중 서
국 무 조 정 실 장	임 상 규